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19년 1월 | 2019/01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부다페스트 조약

### 뉴질랜드의 가입

뉴질랜드는 2018년 12월 17일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이로써 해당 조약의 총 당사국 수가 81개국 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뉴질랜드에 대하여 2019년 3월 17일부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가입은 토크라우 제도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부다페스트 통지 내용(Budapest Notification No. 332)을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budapest/treaty\\_budapest\\_332.html](http://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budapest/treaty_budapest_332.html)

### 부다페스트 조약이란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을 요약하고 해당 조약의 주요 장점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영어)

[www.wipo.int/treaties/fr/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www.wipo.int/treaties/fr/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프랑스어)

[www.wipo.int/treaties/es/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www.wipo.int/treaties/es/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스페인어)

## 몬테네그로에서의 특허 보호 취득

유럽 특허청(EPO)의 확장 절차를 통해 2010년 3월 1일부터, PCT에 따라 출원된 출원을 포함한 유럽 특허 및 유럽 특허 출원이 몬테네그로까지 확장 가능하게 된 바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2010/02호 참조). 몬테네그로의 지정과 모든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회원국의 지정이 취하되지 않는 한, PCT 루트(PCT Route)를 통해 유럽 특허를 몬테네그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모든 PCT 출원에서 청구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몬테네그로 특허청은, 몬테네그로 특허청에 국내단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원하는 출원인들은 유럽 특허청에서 지역단계에 진입해야 한다고 국제사무국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아래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유럽 지역단계 진입 기간(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유럽 특허청에 확장수수료(현재 EUR 102)를 납부해야 함
-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의 허여 또는 거절 결정을 포함하는 실체 심사는 유럽 특허청에서 수행
- 유럽 특허청에 의한 유럽 특허 허여 공고일로부터, 몬테네그로 특허법에 따른 국내 특허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확장된 유럽 특허에서 부여. 단, 유럽 특허 허여가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의 보유자가 몬테네그로 특허청에 해당 유럽 특허의 청구범위에 대한 몬테네그로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허여된 유럽 특허의 특허 청구범위 번역문에 대한 인쇄 비용과 소정의 공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몬테네그로는 자국에 확장되어 허여된 유럽 특허에 관한 자료를 자국 등록부에 공고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몬테네그로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가입하도록 초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해당 협약에 가입하여 체약국이 되면, PCT 조약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내 루트(national route)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EP 및 ME)을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PCT-PPH) 시범사업

### 페루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보호청, 글로벌 PPH(GPPH) 시범사업에 참여

2019년 1월 6일, 페루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보호청(National Institute for the Defense of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eru))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관청 수가 총 26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에 따르면, 참여관청 중 한 곳에 출원하는 경우, 다른 참여관청에서 발행한 자료(해당 시,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PCT 견해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제2장) 포함)를 토대로 출원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이전에 심사한 관청으로부터 특허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나머지 관련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요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통일된 자격요건을 적용하며,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PPH 네트워크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GPPH 시범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아래 PPH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http://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

PCT 웹사이트 내 PCT-PPH 관련 페이지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 미국 특허청(USPTO): 2018년 12월 5일 및 2019년 1월 14일 휴무

미국 특허청은 연방 공휴일로 인정되는 아래 날짜에 공식 사무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 2018년 12월 5일(대통령 포고에 따라)
- 2019년 1월 14일(기상 악조건으로 인해)

이에 따라, PCT 규칙 80.5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 중 하나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18년 12월 6일과 2019년 1월 15일에 각각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휴무에 대한 공지는 아래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operating-status#dec52018](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operating-status#dec52018)

[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operating-status#jan142019](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operating-status#jan142019)

## PCT 정보 업데이트

###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호주 특허청은 선조사가 호주 특허청에 도움이 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사료의 최대 50%를 반환하도록 조사료 반환 조건을 변경했다고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U) 업데이트)

### PCT 행정지침 개정

2019년 1월 1일부로, PCT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내 섹션 102, 109, 705*bis*, 713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섹션 406*bis*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된 행정지침 통합본은 PCT 웹사이트에서 PDF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영어)

[www.wipo.int/pct/fr/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fr/texts/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s/texts/index.html) (스페인어)

영어 및 프랑스어 버전은 HTML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 변동사항은 아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 PCT 서식 개정 (2019년 1월 1일 발효)

아래 언급된 개정 서식들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forms/index.html](http://www.wipo.int/pct/en/forms/index.html)

개정 관련 추가 세부내용은 아래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을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 출원서 서식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출원서 서식(PCT/RO/101)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PCT/IPEA/401)의 2019년 1월 버전을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리관청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RO/102 (소정의 수수료 납부 관련 통지서)

PCT/RO/106 (국제출원의 흠결 보정 요구서)

PCT/RO/130 (국제공개 정보 생략 요청 요구서)

PCT/RO/133 (소정의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 요구서)

PCT/RO/156 (PCT 규칙 4.17에 따라 출원서에 기재된 선언의 보정 요구서)

해당 서식들은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PCT/ROIB/199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의 접수 통지서)

해당 서식은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ISA/201 (국제형조사보고서)

PCT/ISA/203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PCT/ISA/210 (국제조사보고서)

PCT/ISA/215 (국제공개 정보 생략 요청 요구서)

PCT/ISA/220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선언서 송부 통지서)  
PCT/ISA/237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해당 서식들은 PDF 형식으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충적 조사기관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SISA/502(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PCT/SISA/507(보충적 조사 청구서 미제출 간주 선언서)  
PCT/SISA/512(국제공개 정보 생략 요청 요구서)

해당 서식들은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IB/308(a) (국제출원의 송부를 출원인에게 알리는 최초의 통지서(조약 제22조제1항에 의한 30개월의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지정관청들 대상))  
PCT/IB/308(b)(국제출원의 송부를 출원인에게 알리는 추가적인 두 번째 통지서(조약 제22조제1항에 의한 30개월의 기한을 적용하는 지정관청들 대상))  
PCT/IB/311 (국제출원 공개 관련 통지서)  
PCT/IB/313 (국제출원의 흠결 통지서)  
PCT/IB/315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PCT/IB/332 (선택관청에의 선택통지 관련 정보)  
PCT/IB/338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 또는 제2장) 번역문 사본의 송부 통지)  
PCT/IB/367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기재 요구서)  
PCT/IB/368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송부 통지서)  
PCT/IB/369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간주 통지서)  
PCT/IB/370 (PCT 규칙 4.17에 따라 출원서에 기재된 선언 보정 요구서)  
PCT/IB/373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  
PCT/IB/375 (보충적 조사 청구서)

개정 서식 PCT/IB/375는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나머지 개정 서식들은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2019년 1월 1일부로,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내 단락 76, 139, 141, 143, 149, 153, 159, 161A, 222, 222A, 223 내지 227, 267, 273, 290, 307, 322 및 337과, 단락 138과 139 사이에 있는 도표가 각각 수정되었습니다. 부속서 B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된 가이드라인 통합본은 PCT 웹사이트에서 PDF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http://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영어)

[www.wipo.int/pct/fr/texts/gdlines.html](http://www.wipo.int/pct/fr/texts/gdlines.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gdlines.html](http://www.wipo.int/pct/es/texts/gdlines.html) (스페인어)

영어와 프랑스어는 HTML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2019년 1월 1일부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내 단락 17.11의 항목(vii)과 제21장이 수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개정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 개정본은 P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pdf/ispe.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ispe.pdf) (영어)

[www.wipo.int/pct/fr/texts/pdf/ispe.pdf](http://www.wipo.int/pct/fr/texts/pdf/ispe.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pdf/ispe.pdf](http://www.wipo.int/pct/es/texts/pdf/ispe.pdf) (스페인어)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실무그룹 보고서

201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제11차 PCT 실무그룹의 보고서(문서 PCT/WG/11/27)가 서신 왕래를 통해 채택되어 해당 회차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아래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429](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429)

### 원격학습과정: 특허협력조약 개론 (2019년 1월 제공)

PCT에 관한 기초적 원격학습과정(DL101PCT)이 영어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곧 다른 9개 PCT 공개언어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데이트로 모듈 5(PCT 전자서비스)의 내용이 바뀌고



모듈 1(PCT란 무엇인가?)과 모듈 2(왜 PCT를 왜 이용하는가?)의 끝부분에 퀴즈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PCT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전반적 개요를 제공하고, 전적으로 자기학습을 기반으로 하며 이해도와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포함합니다. 해당 과정의 모듈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과정 수료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무료이며 수강을 원하시면 아래 WIPO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 (한국어판)

## PATENTSCOPE 검색시스템

불가리아 및 조지아, 이탈리아,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루마니아의 국내 자료들

불가리아 및 조지아, 이탈리아,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루마니아의 국내 특허 자료들을 이제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advancedSearch.jsf>

이로써 PATENTSCOPE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또는 지역 관청의 수는 현재 57개입니다.

## 2018년 WIPO 지식재산 현황

2018년 WIPO 지식재산 현황(WIPO IP Facts and Figures 2018)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82&plang=EN](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82&plang=EN)

해당 자료는 지식재산(IP) 활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의 네 가지 유형의 산업재산을 다루는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주로 2017년 통계자료가 사용되었는데(완전한 통계치가 확보 가능한 최신 연도), 통계자료는 WIPO의 종합적 보고서인 "2018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PCT 뉴스레터 2018/12호에 출간 안내)에서 나왔습니다.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버전도 곧 준비될 예정입니다.

## 유용한 도움말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주장을 확인하는 정도

Q: 제가 출원한 국제출원에서 선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했는데, 국제단계에서 이러한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ISA) 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중 적어도 어느 한 곳이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은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에 의해서만 확정적으로 결정됩니다. 관련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권에 관한 규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파리협약)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제출원은,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파리협약 당사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출원된 하나 이상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선언("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PCT 절차상 우선권 주장은 특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 PCT에 따른 기간의 계산을 위한 우선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PCT 제2조(xi)(a) 참조).

수리관청과 국제사무국이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유효성(substantive validity)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수리관청이 먼저, 그리고 그에 이어 국제사무국이, PCT 규칙 4.10의 요건대로 아래 선출원 관련 정보가 모두 우선권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선출원일자(보통 국제출원의 우선일로 간주)
- 선출원번호
- 선출원이 어디서 출원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 선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출원된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파리협약 당사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명
  - 선출원이 지역출원인 경우, 출원된 지역관청의 명칭<sup>1</sup>
  - 선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 출원된 수리관청의 명칭

ePCT나 PCT-SAFE를 통해 출원하면 해당 소프트웨어가 자동 확인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우선권 주장에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이는 JPO PAS나 EPO 온라인 출원 시스템과 같은 다른 특정 전자적 출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수리관청과 국제사무국은, 선출원일자의 포함 여부 외에도, 국제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즉, "우선권 기간" 이내에(PCT 규칙 2.4 참조)) 출원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국제출원일자가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국제출원일자가 해당 만료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 주장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선권 기간과 관련하여 국제단계에서 수리관청 또는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에서 출원인의 우선권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각각 PCT 규칙 26의2.3 및 PCT 규칙 49의3.2 참조).

우선권 주장과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2개월의 우선권 기간 만료부터 2개월이 지나서 출원이 됐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선출원번호나 선출원일자가 우선권 서류에

<sup>1</sup> 관련 지역특허조약 당사국 중 적어도 하나가 파리협약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도 아닌 경우, 선출원이 출원된 적어도 하나의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우선권 주장에 명시되어야 함(PCT 규칙 4.10(b)(ii))



기재된 번호나 일자와 상이한 경우,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은 PCT 규칙 26의2.2에 따라 출원인에게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내용의 보정/추가에 대한 추가 정보는 향후 본 유용한 도움말 섹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PCT 규칙 26의2.1(a)에 따른 해당 기간 이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우선권 주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파리협약의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서 출원되지 않은 경우
- 국제출원이 우선권 기간의 만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출원된 경우
- 우선권 주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즉 선출원이 출원된 일자와 출원된 국가 및/또는 관청의 명칭이 누락된 경우

이러한 경우, 선출원일자는 PCT에 따른 기간의 계산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CT 규칙 26의2.2(c)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만 무효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규칙 4.10(a)(ii)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번호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 우선권 주장의 기재사항이 우선권 서류상의 해당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이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해당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함)

국제조사기관 및 해당 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있어,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은 우선권의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구성할 수 있는데 주장된 우선권 일자나 그 이후에 그리고 국제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주장된 우선권 일자의 유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국제출원일(또는 다른 유효한 우선권 주장의 가장 빠른 일자)을 견해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의 기준일로 사용하여 이를 해당 견해서나 보고서의 제2기재란에 반영합니다(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내 단락 6.06 참조).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 주장이 그 자체로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으며, 이들 기관의 견해서나 보고서는 국내단계에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은,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제단계를 위해 우선권 주장이 무효라는 선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정관청은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동일인이 아니거나 출원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선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51의2.1(a)(iii))(PCT 규칙 4.17(iii)에 따른 선언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필요). 지정관청은 또한 실제심사를 하면서, 파리협약에 따라, 청구범위가 선출원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 신청에 관한 추가 정보는, *PCT 뉴스레터* 2015/09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http://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

그리고 PCT 출원인 가이드 내 국제단계 부분의 단락 5.062-5.069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업데이트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협정

호주 특허청

캐나다 특허청

### PCT 정보 업데이트

AZ 아제르바이잔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팩스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CO 콜롬비아 (수수료)

IL 이스라엘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관련 특별 규정, 수수료)

SV 엘살바도르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이스라엘 특허청,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노르딕 특허 연구소(Nordic Patent Institute), 스웨덴 특허등록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이스라엘 특허청)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9년 2월 | 2019/02호

## PCT 웨비나(Webinar) 안내

WIPO에서는 온라인 세미나 서비스인 웨비나를 통해 원격으로 PCT 관련 정보 및 강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국어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ePCT를 활용한 PCT 출원 및 중간서류 제출

일시: 2019. 3. 26. (화) 오후 5시~6시 (한국 시간)

사전 등록: 아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사전 등록 신청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2500047946302781442>

이용: 등록 후 안내 메일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정해진 시간에 접속 (무료)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나 이어폰 등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비 필요)

안내 및 문의 (한국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PCT 운영국 운영1팀  
([pct.team1@wipo.int](mailto:pct.team1@wipo.int))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관련 내용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WIPO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호에서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sup>1</sup>이 출원인의 명시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모두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참여관청은 첫 해에(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건의 국제출원을, 두 번째 해에(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와 유사한 양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참여관청 소식

### 중국 특허청(CNIPA)

지난 PCT 뉴스레터 2018/12호에서는 중국 특허청이 영어로 출원된 출원 40건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중국 특허청은 이제 중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2019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협력심사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총 10건의, 그리고 출원인 당 두 건의 중국어로 출원된 출원만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된 출원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cnipa.gov.cn/zscqgz/1135630.htm](http://www.cnipa.gov.cn/zscqgz/1135630.htm)

### 미국 특허청(USPTO)

지난 PCT 뉴스레터 2018/12호에 게재된 미국 특허청이 협력심사 시범사업 첫 해 동안 주심기관으로서 접수할 국제출원 50건 한도에 다가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미국 특허청은 이제 해당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시범사업 운영 두 번째 해가 시작되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국제출원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PTO/bulletins/22b9810>

협력심사 시범사업 관련 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filing/cse.html](http://www.wipo.int/pct/en/filing/cse.html)

<sup>1</sup> 중국 특허청(CNIPA),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및 미국 특허청(USPTO)

## ePCT 업데이트

PCT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이 2019년 1월부로 개정되었습니다(PCT 뉴스레터 2019/01호 참조). 이에 따라 섹션 109("서류참조기호(File Reference)") 관련 사항도 개정되어, 서류참조기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 글자수가 12개에서 25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말 ePCT에 패치가 적용되어 서류참조기호란에 입력 가능한 글자수가 25개로 증가했습니다.

ePCT를 통해 출원된 국제출원의 서류참조기호 입력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71](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71)

## PCT 정보 업데이트

### EP 유럽 특허청 (번역문의 필수 내용, 수수료, 지역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유럽 특허청은 지역단계 진입에 관한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지역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의 필수 내용: PCT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범위의 번역문이 제때에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청구범위만 무시되고(PCT 규칙 49.5(c)의2)) 해당 국제출원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지정료, 연장료 및 인증료: 이들 수수료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또는 국제조사보고서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국내수수료 중 심사료 부분: 심사 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료는, PCT 제22조 또는 제39조제1항 및 EPC 규칙 159(1)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한과 국제조사보고서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한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
- 뉴클레오티드(nucleotide) 및/또는 아미노산서열목록 제출에 관한 PCT 규칙 51의2에 따른 특별요건: 출원인은 뉴클레오티드 및/또는 아미노산서열목록을, 유럽 특허청이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함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EP) 업데이트)

###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2019년 4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유럽 특허청 .....	JPY
일본 특허청 .....	EUR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EP 및 JP) 업데이트)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출원인 가이드 (영어 및 프랑스어 버전)

PCT 출원인 가이드 내, PCT 국제단계가 자세히 설명된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부분의 영어와 프랑스어 버전이 2019년 1월 31일 업데이트되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appguide/](http://www.wipo.int/pct/en/appguide/)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업데이트 버전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 PATENTSCOPE 검색시스템

### 화학적 하위구조(chemical substructure) 검색기능 제공

PATENTSCOPE에서 화학적 구조의 정확한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하위구조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하위구조 검색을 통해 상위구조에 포함된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내 검색질의(query)에 매칭되는 물질을 개방 원자가(open valence) 위치의 치환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검색으로 처음 검색한 구조의 화학적 환경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원부 포털사이트(Patent Register Portal)

특허출원의 수명주기 중에는 "심사중", "취하됨", "특허 허여됨", "불복 진행중", "소유권 변경"과 같은 출원의 상태를 결정하는, 여러 사건 또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이러한 사건/행위와 그에 따른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특허권의 최신 상태와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립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 예를 들어 소송에 필요할 수 있는, 특허의 현재의 법적 상태에 대한 증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WIPO 회원국들의 온라인 특허등록원부에 관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하는 글로벌 포털사이트의 개발을 권고한 WIPO의 자체 연구에 따라, WIPO는 지난 2013년 특허등록원부 포털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전세계 국가들에서의 특허의 법적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포털사이트에는, 국내 및 지역의 특허등록원부와 공보에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법적상태 관련 정보의 종류에 관한 내용과, 해당 당국에 접속하는 링크나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제공됩니다.

특허등록원부 포털사이트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고급검색기능을 제공하도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버전에서는 200개가 넘는 국가 및 특허자료 보유기관에 관한 정보를 검색기능을 갖춘 지도와 표를 통해 제공하며, 또한 자세한 법적상태에 관한 정보와 검색 도움말, 관련 특허보호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허등록원부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래 중 하나로 조회 가능한 온라인 등록원부
  - PCT 출원 또는 공개 번호
  - 출원인 또는 발명자 이름
  - 우선권 데이터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는 온라인 등록원부
  - 특허의 수명주기와 관련된 수수료의 납부 상태
  -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일
  -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법적상태
  - 특허당국과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간의 교신 내용
  - 특허기간 연장서
  - 온라인 등록원부의 국가에서 효력을 갖는 지역특허 및 특정 국가가 지역 특허발행기관의 일원이거나 지역 특허정보 보유기관의 회원인지의 여부

또한, 여러 검색기준을 합쳐 필터링을 적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영문으로 제공 가능하고 발명자 및/또는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등록원부 등).

특허등록원부 포털사이트는 아래 WIPO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atent\\_register\\_portal](http://www.wipo.int/patent_register_portal)

위 사이트에는 포털사이트 이용 방법에 관한 짧은 영상과, 추가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됩니다.

## 유용한 도움말

### 누락된 우선권 주장의 추가 신청

*Q: 2019년 1월 15일에 국제출원을 했는데, 해당 출원에서 두 개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각각 2018년 2월 5일과 19일에 출원). 그런데 두 개 중 날짜가 더 빠른 출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잘못해서 신청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기한이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출원 후에도 우선권 주장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단 아래와 같은 PCT 규칙 26의2.1(a)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또는 보정이나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 이내에, ...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또는 ... 우선권 주장을 추가...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통지는 국제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제출될 수 있다."

문의하신 출원인의 경우, 출원서(2018년 2월 5일자)에 추가될 우선권 주장이 다른 출원서(2018년 2월 19일자)에 이미 포함된 우선권 주장을 시간상 앞서기 때문에, 두 우선권 주장 중 더 빠른 2018년 2월 5일로부터 1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즉, 2019년 6월 5일까지), 누락된 우선권을 추가할 것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PCT 규칙 26의2.1(a)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4개월이라는 또 다른 기한은 본 경우에 적용하면 2019년 5월 15일이 되어 출원인에게 더 불리하므로 고려할 필요 없음).

출원인은 수리관청(특히, 선출원이 해당 수리관청에 출원되었고, 또한 해당 우선권 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제공할 것을 해당 수리관청에 요청하려는 경우)과 국제사무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우선권 주장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제출원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면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권한이 있는 자, 즉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ePCT로 해당 국제출원을 조회할 수 있으면,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 기능을 통해 신청사항을 업로드하면 국제사무국이(또는 ePCT를 통해 문서접수가 가능한 수리관청이면 해당 수리관청에서) 이를 빨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ePCT를 통해 출원을 조회할 수는 없어도 WIPO 계정이 있다면, ePCT로 로그인하여(<https://pct.wipo.int>) 문서 업로드 기능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PCT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의 혜택을 누리려면 WIPO 계정으로 ePCT에 로그인한 뒤, 링크를 따라 출원을 안전하게 제출하고 관리하도록 안전한 온라인 조회에 필요한 강력한 인증방법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생성 및 ePCT 이용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온라인 서비스 도움말 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http://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

ePCT를 사용하기 위한 WIPO 계정이 없는데 기한이 곧 만료되어 국제사무국에 신청서를 급히 제출해야 한다면, 아래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PCT 비상 문서 업로드 서비스(PCT contingency upload service)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8/12호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에 정기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 WIPO 계정을 만드는 것이 빠르고 쉬운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선권 주장의 추가(또는 보정)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직 만료되지 않은 기한은 변경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PCT 규칙 26의2.1(c)). 문의하신 출원인의 경우, 날짜가 더 빠른 우선권 주장의 추가를 요청하면, 출원인의 우선일은 2018년 2월 19일에서 2018년 2월 5일로 변경됩니다. 그리하여 PCT에

다른 여러 기한들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가장 빠른 국제공개일과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기한도 모두 2주씩 앞당겨집니다.

누락된 우선권 주장과 관련하여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 서류)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2월 5일자 출원을 해당 수리관청에 출원한 경우 수리관청에 해당 인증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우선권 서류가 PCT 규칙 17<sup>2</sup>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관할 당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선출원이 우선권 서류를 위한 WIPO의 온라인 조회 서비스(DAS)에 기탁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에 출원되었으면, 처음에 출원한 해당 관청에 DAS에 해당 선출원을 입력할 것을 요청한 다음, 국제사무국에 DAS를 통해 우선권 서류를 조회할 것을 국제공개일 전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PCT 규칙 17.1(b) 및 (b의2)).

PCT 규칙 26의2.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추가를 위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그리고 특별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국제사무국에 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26의2.2(e)). 그러면 해당 내용이 PATENTSCOPE에, 공개된 국제출원의 "서류(Documents)" 탭에 "늦게 제출된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신청의 공개(Publication of Late Submitted Request to Correct/Add Priority Claims)"란 제목으로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우선권 주장이 출원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단계(또는 지역단계)에서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을 통해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관련국내법(또는 지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PCT 뉴스레터* 2019/01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up>2</sup> 우선권 서류는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이나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사무국이 해당 기한이 만료된 후에 접수한 우선권 서류는,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일 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경우 해당 기한의 마지막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PCT 규칙 17.1(a) 참조).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AT 오스트리아 (수수료)

RO 루마니아 (수수료)

SE 스웨덴 (전화번호)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화번호)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일본어 버전)

PCT 하이라이트 (중국어 및 일본어 버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일본어 버전)

# PCT NEWSLETTER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2018년 PCT 출원

2018년에도 PCT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5만 건이라는 기록적 수준의 PCT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약 253,000 건<sup>1</sup>의 출원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대비 3.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에 소재한 출원인들이 전체 PCT 출원의 과반(50.5%)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과 대한민국, 인도에서의 출원이 현저히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유럽 출원인들은 전체 출원의 24.5%를, 북아메리카 출원인들은 23.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출원인들은 2018년 총 출원 건수의 22.2%에 달하는 56,142건을 출원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을 바짝 뒤쫓아 중국이 전체 출원의 21.1%인 53,345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2위에 올랐습니다. 일본(49,702건), 독일(19,883건), 대한민국(17,014건)도 2017년과 동일하게 3위부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 국가별 출원 총계 및 전체출원 대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56,142 건	22.2%
2. 중국	53,345 건	21.1%
3. 일본	49,702 건	19.6%
4. 독일	19,883 건	7.9%
5. 대한민국	17,014 건	6.7%
6. 프랑스	7,914 건	3.1%

<sup>1</sup> 2018년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모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 않는 탓에, 해당 총계와 하기 수치들은 잠정적인 값이며, 최종 수치들은 올해 중 추후에야 확인 가능.

7. 영국	5,641 건	2.2%
8. 스위스	4,568 건	1.8%
9. 스웨덴	4,162 건	1.6%
10. 네덜란드	4,138 건	1.6%

상위 15 개 국가 중, 인도(+27.2%)와 핀란드(+14.7%) 두 국가만 2018 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9.1%)과 대한민국(+8%)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중국의 증가율은 2002 년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은 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5 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6.6%), 프랑스(-1.2%), 미국(-0.9%)은 각각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국가들의 출원 건수와 2017 년 출원 대비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보도자료 PR/2019/830 에 나온 부속서 1 을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9/article\\_0004.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9/article_0004.html)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는 2018 년 5,405 건의 출원을 기록하며 2 년 연속 최다 출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일본), 인텔 코포레이션(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ZTE 코포레이션(중국)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 위권 출원인들과 2018 년 해당 출원인들의 이름으로 공개된 PCT 출원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웨이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Huawei Technologies Co. Ltd, 중국) 5,405 건
2.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2,812 건
3. 인텔 코포레이션(Intel Corporation, 미국) 2,499 건
4.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국) 2,404 건
5. ZTE 코포레이션(ZTE Corporation, 중국) 2,080 건
6.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한국) 1,997 건
7. BOE 테크놀로지 그룹 컴퍼니 리미티드(BOE Technology Group Co., Ltd, 중국) 1,813 건
8.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한국) 1,697 건
9. 주식회사 에릭슨(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스웨덴) 1,645 건
10. 로버트 보쉬 코포레이션(Robert Bosch Corporation, 독일) 1,524 건

상위 50 위 PCT 출원인 목록은 상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2). 교육기관의 출원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501 건의 공개출원으로 1993 년부터 계속해서 PCT 제도 최대 사용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 10 위는 미국의 교육기관 5 개와 아시아의 교육기관 5 곳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들이 상위 10 위권에 든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기관들의 출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3).



기술 분야별 PCT 출원을 살펴보면, 디지털 통신(전체의 8.6%)이 컴퓨터 기술(8.1%)을 앞질러 PCT 공개출원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 기계, 장치 및 에너지(7%), 의료 기술(6.7%), 운송(4.6%)이 상위 10위의 기술 분야들 중, 운송(+11.3%), 디지털 통신(+10.1%), 반도체(+9.8%)가 2018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공개출원 기술 분야별 분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4).

2018년 출원 관련 최종 수치는 올해 중 추후에 PCT 뉴스레터를 통해(PCT 연보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국제기관회의(MIA)

제 26차 PCT 국제기관회의가 2019년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의 요약서(Summary by the Chair)와 작업 문서는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526](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526)

의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품질 하위그룹(Quality Subgroup)의 회의 결과 및 추가 품질관리를 위한 해당 그룹의 권고사항. 세부내용은 의장의 요약서를 참고하십시오(문서 PCT/MIA/26/13의 부속서 II).
- 유럽 특허청이 이끌고 있는 PCT 최소문헌 전담반(TF)의 현황보고서(문서 PCT/MIA/26/8). 국제기관회의는, 해당 전담반이 실제 회동하여 특허문헌 모음(patent collections)을 PCT 최소문헌에 편입시키기 위한 기술 요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데 동의.
- PCT 절차에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관한 일본 특허청의 제안(문서 PCT/MIA/26/6).
- 수수료 수입의 통화 환율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리관청 및 국제조사기관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PCT 수수료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구조("netting structure")의 도입에 관한 경과보고서. 국제사무국은 제 12차 PCT 실무그룹 회의에서 PCT 법적 틀 안에서 그러한 구조를 시행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임(문서 PCT/MIA/26/3).
-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에 관한 WIPO 표준 ST.25에서 XML 기반의 WIPO 표준 ST.26으로의 이행(문서 PCT/MIA/26/2).
- 2018년 7월 시작되어 3년간 진행될 IP5 관청들 간 협력심사(CS&E)의 제 3차 시범사업의 운영단계. 이에 따라 관청들은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된 출원을 수리하기 시작(문서 PCT/MIA/26/4).
- 관청에서 전자통신수단 제공에 문제가 생겨 출원인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문서 PCT/MIA/26/5).
- PCT 규칙 4.11(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출원, 또는 모출원 또는 모특허의 표시 관련)에 따른 표시의 보정 또는 추가에 관해 PCT 내 법적 근거 제공(문서 PCT/MIA/26/7).
- 국제출원에 국내분류기호 사용(문서 PCT/MIA/26/10).

-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사관, 출원인, 제 3 자를 포함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획 및 실시할 것을 중국 특허청이 제안 (문서 PCT/MIA/26/11).
- 국제조사를 수행할 기관을 출원인이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을 조사 및 예비심사할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해당 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단계를 없앨 것을 인도 특허청이 제안(문서 PCT/MIA/26/12).

각 기관은 최근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 수리관청, 국제기관 및 제 3 자들이 사용하도록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문서 PCT/MIA/26/9).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은, 관청 간 전달이나 출원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의 재사용을 위해 일관된 표준에 따른 데이터 작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각 관청이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히 출원서 서식의 서지정보에 있어 조사 및 심사 보고서를 위해 출원 본문을 DOCX 와 XML 같은 형식으로부터 변환하는 데 있어 관청들 간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 조지아 특허청(SAKPATENTI)

조지아 특허청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 DAS 기탁관청 및 이용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738](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738)

### 이스라엘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은 2019 년 5 월 1 일부터 DAS 기탁관청 및 이용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740](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740)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서는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는 IP5 관청들<sup>2</sup>이 출원인의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모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참여관청은 첫 해에(2018 년 7 월 - 2019 년 6 월) 주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 건의 국제출원을, 두 번째 해에(2019 년 7 월 - 2020 년 6 월) 이와 유사한 양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sup>2</sup> 중국 특허청(CNIPA),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및 미국 특허청(USPTO)

## 참여관청 소식

### 일본 특허청(JPO)

협력심사 시범사업에서 주심기관으로서의 일본 특허청은 먼저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9 년 4 월 1 일부터는 일본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출원이 시범사업에 잠정적으로 수리되면, 해당 출원의 영어 번역문이 잠정적 수리의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jpo.go.jp/system/patent/pct/seido/document/pct\\_kyoudouchousa\\_shikou/pilot\\_project\\_e.pdf](http://www.jpo.go.jp/system/patent/pct/seido/document/pct_kyoudouchousa_shikou/pilot_project_e.pdf)

### 유럽 특허청(EPO)

협력심사 시범사업에서 주심기관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은 영어로 된 국제출원에 대한 첫 해 할당량을 2018 년 9 월에 이미 달성하였고(*PCT 뉴스레터* 2018/09 호), 2019 년 1 월 1 일부터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PCT 뉴스레터* 2018/12 호). 유럽 특허청은,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된 출원에 대해 필요 할당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며 이들 언어로 된 출원이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출원이 시범사업에 잠정적으로 수리되면, 해당 출원의 영어 번역문이 잠정적 수리의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epo.org/service-support/updates/2019/20190220.html](http://www.epo.org/service-support/updates/2019/20190220.html)

### 미국 특허청(USPTO): 2019 년 2 월 20 일 휴무

미국 특허청은 기상 악조건으로 인해 연방 공휴일로 인정된 2019 년 2 월 20 일 공적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 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19 년 2 월 21 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휴무에 대한 공지는 아래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losure-20190220.pdf](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losure-20190220.pdf)

## PCT 정보 업데이트

### CN 중국 (관청명)

중국 특허청은 그 영문 명칭이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PRC (CNIPA)"가 아닌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라고 국제사무국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CN) 업데이트)

국제조사보고서,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캐나다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 일본 특허청, 우크라이나 특허청, 칠레 산업재산권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서의 아래의 관청들은, 출원인과 지정관청(또는 해당 시 선택관청)이 국제조사보고서,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캐나다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핀란드 특허청(PRH)

이스라엘 특허청

일본 특허청

우크라이나 특허청

칠레 산업재산권청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CL, FI, IL, JP, RU, UA), SISA(FI, RU, UA) 및 E(CA, CL, FI, IL, JP, RU, UA)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행정지침

2019 년 4 월 1 일부로 PCT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 별첨 I 부터 부속서 F 까지 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PCT/IPEA/401)과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에 부속된 수수료 계산 용지, 그리고 PCT 출원서 서식(PCT/RO/101)에 부속된 수수료 계산 용지가 변경되었습니다.

2019 년 4 월 1 일부로 시행되는 별첨 I 의 통합본에 해당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pdf/ai\\_dtd\\_13.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ai_dtd_13.pdf) (영어)

[www.wipo.int/pct/fr/texts/pdf/ai\\_dtd\\_13.pdf](http://www.wipo.int/pct/fr/texts/pdf/ai_dtd_13.pdf) (프랑스어)

### 품질보고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각자 국제기관<sup>3</sup>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한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에서 2018 년도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http://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sup>3</sup>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문단 21.26 및 21.27 에 따름.

## PCT 특별기사

WIPO 매거진(2019/1 호)에 실린 아래 기사에 대한 링크가 PCT 홈페이지 내 "PCT 특별기사"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http://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

### 엘라페(Elaphe): 전기자동차의 발전을 견인하다

한 세기가 넘도록 내연기관은 자동차 업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도로 안전성에 관한 우려로 인해 전기자동차와 인휠 모터(in-wheel motor)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휠 모터를 통한 차량 추진은, 모터가 차량 바퀴에 설치되어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기에, 간단하고 에너지 소모 대비 효율이 높은 방식입니다.

류블라나에 소재한 슬로베니아 기업인 엘라페(Elaphe Propulsion Technologies) 사는 지난 15년간 인휠 모터 설계 및 제조에서 선두를 지켜 왔습니다. 엘라페의 수석 기술 임원인 고라즈 고토바크(Gorazd Gotovac)는 WIPO 매거진에게 엘라페의 PCT 이용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엘라페는 PCT를 광범위하게, 또한 몇 가지 이유로 사용해 왔습니다. PCT는 절차가 단순하고, 조사보고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신 기술에 대한 우리의 자체 조사를 보충해 줄 수 있죠. 새로운 혁신이 매일 탄생하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PCT 절차의 기간은 우리에게 시장과 상품 정보가 더 명확해지고 특허 취득의 경제적 이점도 더 평가하기 쉬워질 때까지 전략적 의사결정을 미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주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http://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19/1 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ipo.int/wipo\\_magazine/en/2019/01/](http://www.wipo.int/wipo_magazine/en/2019/01/)

## 2019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 금을 향한 발돋움 - 지식재산과 스포츠

올해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금을 향한 발돋움 - 지식재산과 스포츠"를 테마로 스포츠 세계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즉,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이들을 고취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발전과 향유를 지지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WIP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WIPO 설립조약(WIPO Convention)이 1970년에 발효된 날인 4월 26일을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음악과 인문학에서부터 세상을 조형하는 기술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지식재산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해마다 제공해 왔습니다.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대한 추가 내용과 세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보시려면, 아래 W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ip-outreach/en/ipday/](http://www.wipo.int/ip-outreach/en/ipday/)



상기 사이트에서는 캠페인 자료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세계 지식재산의 날 행사를 클릭해서 살펴볼 수 있는 행사 지도의 링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고무하며, 혁신시키고 연합시키는 스포츠의 힘을 함께 기념하여 주십시오.

## 유용한 도움말

**출원 전략:**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과 국내관청(또는 해당 시 지역관청) 중 어느 곳에 국제출원을 할 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의 예)

**Q:** 저는 미국의 특허 대리인이고 저를 찾아주신 고객은 미국 거주자이자 캐나다 국민입니다. 고객이 보호하려는 발명은 미국에서 예전에 국내출원이 이루어진 기술입니다. 고객은 PCT 출원을 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나중에 판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단계 중에 아시아 소재 국가에서 출원인이 새로 추가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수리관청에 출원을 할 지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A:** PCT 규칙 19.1 에 따라,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민 및/또는 거주자인 체약국의 국내관청이나,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고객(이하 "출원인")께서는, 국적과 거주지를 봤을 때 미국의 수리관청(RO/US), 캐나다의 수리관청(RO/CA),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 중 한 곳을 선택하여 PCT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수리관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안보 관련사항
- 대리인이 해당 수리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택
- 해당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언어
- 해당 수리관청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 해당 수리관청이 특정 대비책에 관한 규정에 관련하여, 국내법과 상충되어 적용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바가 있는지의 여부(PCT 규칙 26 의 2.3 에 따른 우선권의 회복 등)
-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출원을 하는 경우, 시차 및 해당 수리관청의 운영시간
- 해당 관청에 출원하는 비용(송달료와 수리관청이 수입으로 하여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기타 수수료는 관청마다 상이) 및 해당 수리관청이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와 수수료 납부 관련 방식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어느 수리관청에 출원할 것인지 결정할 때 고려할만한 몇 가지 구체적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살펴볼 점들이 전부가 아니고, 그 외 다른 고려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 관련사항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출원을 관련 국내관청에 일정 기간(관청마다 상이) 전에 제출했고 다른 곳에는 출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안보 공지(security notice)는 받지 않았다면, 아니면 다른 곳에 출원해도 된다는 허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여 받았다면, 다른 관청에 출원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법에는 미국 내에서 탄생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다른 관청에 국제출원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알려진 미국 국내법 규정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nat\\_sec.html](http://www.wipo.int/pct/en/texts/nat_sec.html)

미국의 수리관청에 출원: 국제출원의 대상이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대상과 동일하고 해당 국제출원이 선출원과 동일한 관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보통 국제출원을 할 시기에는 필요한 안보사항 관련 문제 점검이 이미 수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리관청은 국가안보 관련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출원을 국제사무국에 전달하여 처리되도록 하지 않습니다(국제조사를 위해 국제조사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음).

캐나다의 수리관청이나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 캐나다의 수리관청이나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이들 관청은 국가안보 관련 규정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출원 전에 PCT 출원이 미국 국가안보 관련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택

가급적 궁극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지역과 특히 연관성이 있는 선행기술을 조사할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일본의 국제조사기관(ISA/JP)은 다른 국제조사기관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일본어 선행기술을 찾을 수도 있기에, 일본의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궁극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관청과 동일한 국제조사기관(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조사/심사 결과를 받으면, 해당 관청으로부터 국내심사 시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가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수리관청에 따라 국제조사기관(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리관청: 미국의 수리관청은 여러 국제조사기관(및 국제예비심사기관)들을 지정하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호주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 싱가포르 특허청, 미국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

캐나다의 수리관청: 캐나다의 수리관청은 자국 관청만을 국제조사기관(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캐나다의 수리관청에 출원하면 다른 국제조사기관(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인 관청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국제출원이 출원인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계약국의, 또는 그 계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제출된 경우, 관할 국제조사기관(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해당 국제출원의 관할 국제조사기관(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되었을 기관과 동일합니다(PCT 규칙 35.3 및 59.1(b) 참조). 이에 따라, 거주국과 국적이 다른 출원인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하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내관청(또는 해당 시 지역관청)에 출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관할 국제조사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의 경우, 국제조사기관 선택 시, 국제조사기관(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미국의 수리관청(출원인의 거주국이 미국이므로)과 캐나다의 수리관청(출원인의 국적이 캐나다이므로)이 지정한 관청들이 모두 선택 가능 대상이 되어 선택이 폭이 커집니다.

보충적 국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면 어느 곳이든, 국제출원을 제출한 수리관청과 관계 없이, 보충적 국제조사 수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은 국제조사를 수행한 기관과 다른 기관이어야 합니다.

### 수리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

세 군데 수리관청 중 출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곳은 없지만, 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충족해야 할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리관청: 질문자께서 미국 특허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다면, 미국의 수리관청에 출원 시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수리관청: 대리인은 캐나다의 수리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출원인이 해당 수리관청에 대하여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질문자께서는 통신을 위한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로서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수리관청이나 국제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출원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PCT 계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은 누구라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을 할 수 있고(PCT 규칙 19.1(a)(iii)), 이러한 맥락에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보편적 수리관청(universal RO)"으로 여겨지지만, 어느 대리인이든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가 PCT 규칙 83.1의 2<sup>4</sup>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국제출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리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출원인 모두의 국적 및 거주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이 미국 거주자이고 질문자께서 미국의 수리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해서도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캐나다의 수리관청에 대해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는 대리인도 동일).

본 유용한 도움말에 나온 다른 내용을 보시려면(예: 허용되는 출원언어, 수리관청에서 전자출원 사용가능 여부, 납부 수수료 금액, PCT 규칙 26의 2.3에 따른 우선권 회복에 관한 내용 및 적용 기준), 각 관청별로 아래에서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와 C를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수리관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수리관청이 상충 사실에 관한 통지를 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sup>4</sup> PCT 규칙 83.1의 2(a)에 따라, 출원인, 또는 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출원인들 중 어느 한 출원인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PCT 계약국의, 또는 그 계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한 절차를 밟을 권한을 가짐.

관청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유용한 자료인 "관청 프로필(Office Profile)"도 아래 "ePCT 참고자료 검색(ePCT Reference Data Lookup)"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home.xhtml>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케냐 산업재산권기구(Kenya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 곧 국제출원을 전자적 형식으로도 접수 및 처리

### PCT 정보 업데이트

CO 콜롬비아 (수수료)

GR 그리스 (출원언어)

IS 아이슬란드 (위치 및 우편주소)

JP 일본 (인터넷 주소)

KE 케냐 (전자출원)

KZ 카자흐스탄 (전화번호, 통신수단, 국제형조사에 관한 규정)

조사료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스페인어 버전)

유럽 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환급 절차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9년 4월 | 2019/04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PCT 출원인은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선출원 사본을 DAS에서 조회하여 우선권 서류로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직접 인증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이 DAS 기탁관청이어야 하고,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은 DAS 기탁관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 유럽 특허청(EPO)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유럽 특허청은, 유럽특허출원에 대하여 DAS 기탁관청이자 이용관청 역할을, 그리고 유럽 지역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정 또는 선택관청으로서 DAS 이용관청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PCT 뉴스레터 2018/11호 참조).

유럽 특허청은, PCT 수리관청으로서 국제출원에 대한 기탁관청 업무를 2019년 4월 1일부로 시작했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우선권 서류 준비 수수료는, PCT 규칙 17.1(b)의 2)에 따라,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선출원의 인증사본을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하도록 요청(가급적 PCT 출원서 서식(PCT/RO/101, 제 6 기재란)의 해당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정확한 DAS 코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3/a27.html](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3/a27.html)

[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609](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609)

## PCT 규칙 개정

PCT 동맹총회는 지난 2018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50차 회의에서 2019년 7월 1일 발효될 PCT 규칙 69.1(a)의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PCT 뉴스레터 2018/10호 참조).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서, 관련 수수료,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PCT 제 17 조제 2 항(a)에 따른 선언, 그리고 PCT 규칙 43의 2.1에 따라 작성된 견해서를 모두 수리했다면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단, PCT 규칙 54의 2.1(a)의 규정에 따른 기간만료까지 국제예비심사 착수를 연기해 달라는 출원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 통합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아래 각 페이지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ar/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ar/texts/index.html) (아랍어)

[www.wipo.int/pct/zh/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zh/texts/index.html) (중국어)

[www.wipo.int/pct/en/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영어)

[www.wipo.int/pct/fr/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fr/texts/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s/texts/index.html) (스페인어)

기타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ePCT 업데이트

ePCT 신규 버전(4.5)이 2019년 4월 1일 출시되었습니다. 주요 신규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을 위한 ePCT

- 출원인/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file reference): 서류참조기호의 최대 길이가 12 자에서 25 자로 증가
-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청(RO/US)에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명칭: EFS-Web 으로 미국 특허청(RO/US)에 출원할 출원서 초안 작성 시, 이제는 발명의 명칭을 ePCT 에 따로 입력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description) 1 페이지에 나오는 대로라고 표시할 수 있음. 발명의 명칭 누락에 따른 오류 메시지로 인해 제출이 안되는 일이 없어지고(출원서 서식(PCT/RO/101)의 발명의 명칭란에 발명의 명칭 대신 꺾쇠괄호 안에 표준 문구가 기재될 예정), 미국 특허청(RO/US)도 누락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지 않음(마찬가지로 출원 시 ePCT 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장에도 동일한 표준 문구 포함).
- ePCT 로 작성한 내용을 관청의 자체 시스템에 업로드 하도록 요구하는 수리관청에 제출할 출원서 초안 작성 시(예: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미국의 관청), 이제는 "다운로드 됨(downloaded)" 상태의 신규 국제출원 초안을 필요 시 수리관청의 형식으로 다시 다운로드 가능
- 이메일로 통지: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추가 시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면,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하는 모든 PCT 서식은(예를 들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비스 주소가 해당



출원인인 경우) 기본적으로 이메일로만 송부. 단, 이용자가 "서면 및 이메일(paper & e-mail)"을 선택한 경우는 제외되며, "서면으로만(paper only)"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

- 유럽 특허청(EPO)에의 환급 지침: 유럽 특허청(EPO)이 수리관청(RO) 및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선택되거나, 또는 해당 ePCT 액션(Action)을 통해 국제예비심사 청구서 작성 시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되는 경우에, 유럽 특허청(EPO)의 당좌 또는 예금 계좌로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유럽 특허청(RO/EP, ISA/EP 또는 IPEA/EP)이 환급할 수수료에 대한 지침 추가 가능
- 액션 링크: 상응하는 온라인 "액션(Action)"이 있는 "일정표(Timeline)" 상의 항목들에 이제 해당 액션을 바로 열 수 있는 링크가 포함
- 액션 서명: 온라인 액션 서명 시, 서명인은 해당 국제출원의 서지정보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지정보에 서명인의 이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Other)" 선택
- 취하 액션에 대한 복수의 서명: 이제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 지정/선택, 국제예비심사청구 및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을 취하하는 ePCT 액션에 복수의 서명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출원인 중 일부의 서명이 빠지거나, 대리인이 해당 액션에 서명하도록 선택되는 경우, 관련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필요한 출원인들의 서명이 이미 해당 출원 파일에 있다고 표시해야 함. 아니면 국제사무국이 철회 통지를 처리할 수 없음.
- 문서 "보기(View)" 기능: 국제출원 출원과 관련하여 ePCT에 저장된 문서들을 참고 시 "보기(View)" 버튼을 누르면, 국제사무국의 전자시스템에 저장된 것과 같은 TIFF 버전의 해당 문서를 해당 출원의 서지정보와 같은 나머지 내용과 함께 (동일한 브라우저 창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PCT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국제예비심사기관과의 시차: 선택된 국제예비심사기관이 ePCT로 직접 제출된 청구서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는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국제사무국의 현재 일자 및 시각은 아직 해당 기한 내에 있으면, 해당 청구서는 자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 보내져 이후 서식 PCT/IB/368(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송부 통지서)과 함께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송부

신규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출원인을 위한 ePCT 신규 사항(What's new in ePCT for applicants)"을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16](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16)

###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국제기관을 위한 ePCT

관청 이용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관청과 관계된 기능과 개선사항 몇 가지가 ePCT 버전 4.5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청의 국제출원 처리 개선을 위한 여러 신규 기능이 제공되는데, 그 중에는 아래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 이용자가 "보기(View)" 버튼을 선택하면 동일한 브라우저 창에서 ePCT 메인 화면과 나란히 문서를 열어 볼 수 있어, 국제출원의 세부내용을 해당 문서와 같이 볼 수 있음



- 국제출원 처리 시, 기록사본 송부 전에 국제사무국이 출원을 검토하여 의견을 주기를 원하는 수리관청 이용자들은 국제사무국 이용자들에게 조회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나중에 해당 권한을 삭제할 수 있음
- 수리관청 이용자들은 국제출원 생성 후 서지정보 초안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이점을 누림
- 출원인이 선호하는 통신수단으로 이메일을 선택한 경우, PCT 서식 PCT/ISA/210(국제조사보고서) 및 PCT/ISA/237(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이 생성 및 해당 출원인에게 자동 이메일 전송
- PCT/ISA/220(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부작성 선언서 송부 통지서)에 관한 ePCT 액션을 통해, 로컬 컴퓨터와 국제출원으로부터 문서 첨부 가능
- 이제 출원인은 수리관청과 똑같은 레이아웃의 수수료 및 납부 정보 확인 가능
- 관청 관련 신규 액션: 수리관청 이용자들이 서식 PCT/RO/104(국제출원으로서 제출된 서류가 국제출원이 아니고 국제출원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서) 및 PCT/RO/126(국제출원에서 나중에 제출된 부분에 관한 통지서) 작성 가능

상기 및 기타 신규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청을 위한 ePCT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내용은, 아래에서 "기관 및 관청을 위한 ePCT(ePCT for Authorities and Offices)"를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s\\_v4.5\\_Whats\\_New\\_20190329.pdf](http://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s_v4.5_Whats_New_20190329.pdf)

출원인 및 관청을 위한 ePCT의 신규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PCT eServices Help Desk)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pct.eservices@wipo.int](mailto:pct.eservices@wipo.int)

전화: (+41-22) 338 9523

헬프데스크 직원이 대기중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https://pct.eservices.wipo.int/direct.aspx?T=EN&UG=4&N=769>

## PCT-SAFE 업데이트

###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9년 4월 1일, 버전 3.51.087.263)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PCT-SAFE의 이메일 통지 서비스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용자께서는 PCT-SAFE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업데이트 예정). 라이브 업데이트(Live Update) 기능은 최신 버전을 매일 확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이 없으면, PCT-SAFE 는 별다른 메시지 없이 열립니다. 새로운 버전이 있으면 메시지가 나타나 이용자가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할 것인지, 기존 버전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묻습니다.

##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 2019년 5월 31일 공개

2019년 5월 30일 목요일이 WIPO 휴일인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및 모든 공식 공지(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이 다음날인 2019년 5월 31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자정(중앙유럽 표준시(CE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부다페스트 조약

### 엔티가 바부다 가입

엔티가 바부다가 2019년 3월 25일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이로써 동 조약의 총 당사국 수가 82 개국이 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엔티가 바부다에 대하여 2019년 6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다페스트 조약이란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을 요약하고 해당 조약의 주요 장점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문서(WO/INF/12)를 아래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영어)

[www.wipo.int/treaties/fr/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www.wipo.int/treaties/fr/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프랑스어)

[www.wipo.int/treaties/es/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www.wipo.int/treaties/es/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스페인어)

## XML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내용 개선을 위한 PATENTSCOPE 내 신규 서비스

WIPO 는 아래 문서들을 토대로 개선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PATENTSCOPE 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 국제조사보고서(PCT/ISA/210)
-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 선언(PCT/ISA/203)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

해당 서비스는 일부 국제기관에서 제공한 XML 자료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조회하도록 합니다.

- 하이퍼링크
  - 해당 보고서들에서 국제특허분류(IPC) 코드를 클릭하여 WIPO 의 국제특허분류 웹페이지로 바로가기

- 국제조사보고서에 나온 인용문헌(특허문헌 및 특정 비특허문헌) 및 패밀리 특허 문헌을 클릭하여 해당 문서로 바로가기
  -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 선언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해, 인공지능(인공신경망 기계번역)기술을 사용하여 PCT 공개언어 10개로 효과적인 기계번역 곧바로 제공(또는 해당 시 인간에 의한 영어 번역문(XML)을 동일한 링크 기능으로 쉽게 조회)

해당 서비스는 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및 대한민국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최신 보고서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오스트리아 특허청, 이집트 특허청 및 터키 특허상표청과 같은 다른 관청에서 관련 ePCT 관청 기능을 사용해 작성한 일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려면 아래 PATENTSCOPE 검색 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한국어)

그리고 상기된 보고서들이 포함된 특정한 공개된 국제출원을 찾아 새로 생긴 "ISR/WOSA/A17(2)(a)" 탭을 클릭하면 이러한 신규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PATENTSCOPE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러한 문서들의 XML 버전은 아무런 법적 가치가 없으며, 해당 보고서들의 PDF 버전만 공식 공개 자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 IB 국제사무국 (국제출원 제출 수단, 수수료)

국제사무국으로 전자적으로 문서를 전송하는 안전한 서비스인 새로운 비상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가 2018년 말부터 제공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에 하나 기술적인 문제로 ePCT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출원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나 조만간 제공이 중단될 경우(예: 팩스 서비스)에 대비한 대안적인 출원 수단을 제공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비상 업로드 서비스로 신규 국제출원을 제출하면, 출원인은 PCT 수수료표(PCT Schedule of Fees) 항목 4(a)에 따라 전자출원에 대해 100 스위스 프랑의 수수료 감면을 받습니다. 수수료표(Fee Table) I(a)도 이 금액과 유로 및 미국 달러의 등가액이 포함되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급히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ePCT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출원인이 아직 ePCT를 사용해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상 수단으로서 개발되었습니다. 출원인께서는 가능한 ePCT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PCT를 사용하면 특히 해당 시 서지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고 여러 확인기능이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2(IB) 및 C(IB) 업데이트)

### KR 대한민국 (전화번호, 수수료)

대한민국 특허청의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전화:(82-42) 481 87 70 (수리관청)

(82-42) 481 57 41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은 특정 국내수수료 감면 조건에 대해 통지했습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그리고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가, 출원인이 자연인이자 발명자인 경우 70% 감면됩니다. 단, 해당 출원인의 연간 출원 건수가 20건을 초과하면 출원료는 30%만 감면됩니다. 또한 심사청구료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중 하나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작성한 경우 30% 감면되고,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둘 다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작성한 경우 70% 감면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KR) 및 국내편, 요약(KR) 업데이트)

### US 미국 (인터넷 주소)

미국 특허청의 PCT 메인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www.uspto.gov/patentcooperationtreaty](http://www.uspto.gov/patentcooperationtreaty)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US) 업데이트)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비상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 – 자주 묻는 질문(FAQ)

지난 PCT 뉴스레터 2018/11 호와 2018/12 호에서 다룬 비상 업로드 서비스 관련 내용에서 나아가, 이제 해당 서비스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http://www.wipo.int/pct/en/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 (영어)

[www.wipo.int/pct/fr/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http://www.wipo.int/pct/fr/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de/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http://www.wipo.int/pct/de/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 (독일어)

다른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역주: PCT 뉴스레터 2019/04 호 영문판 발간 이후 한국어 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https://www.wipo.int/pct/ko/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

### 유럽 특허청 베를린 지부: 2019년 3월 8일 우편서비스 중단

유럽 특허청은 3월 8일이 독일 베를린 주에서 공휴일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특허청 베를린 지부는 이날 운영이 되었지만 현지 우체국이 영업을 하지 않아 우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따라 유럽 특허청은 EPC 규칙 134에 따라 2019년 3월 8일 만료되는 기한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한 연장에 관한 통지문이 아래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www.epo.org/service-support/updates/2019/20190306.html](http://www.epo.org/service-support/updates/2019/20190306.html)

## 유용한 도움말

### 컬러로 된 도면 제출 시 유의사항

**Q:** 결과물을 컬러로 산출하는 장치로 구성된 발명에 대한 국제출원을 곧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더 잘 이해하려면 도면이 되도록이면 컬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원의 일부로 컬러 도면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면은 어떻게 준비하고, 도면을 일부러 컬러로 제출한다는 사실을 국제사무국에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PCT에는 컬러 도면(또는 사진<sup>1</sup>)에 관한 조항이 없고, 게다가 PCT 규칙 11.13에 따르면, 도면은 "내구성이 있는 짙은 흑색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선명한 선 및 획으로 **착색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어야 합니다[강조 추가].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해당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발명의 설명 부분에 관련 컬러에 관한 필요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일부 관청에서는 국내단계에서 흑백 도면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때 신규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CT에서 컬러 도면의 제출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아도 접수된 컬러 도면은 모두 수리관청 및/또는 국제사무국에서 보관되는데, 다만 해당 도면의 향후 이용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적으로 컬러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A4 크기 용지에 PCT 규칙 11.6(c)에 규정된 최소한의 여백을 준수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PCT 규칙 11.11 및 11.1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컬러 도면이 제출되면 수리관청에서 반드시 대체용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출원인이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해당 수리관청의 보정 요청에 따라서든) 추후에 흑백 대체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이 국제공개를 위해 모든 도면을 (회색톤(greyscale)이 아닌) 흑백으로 변환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에 도면이 제출되기 전에 직접 흑백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또한 공개를 위한 품질도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이 컬러 도면을 흑백으로 변환하거나 스캔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공개출원에 포함된 도면의 선명함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국제출원의 발명의 공개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에서 국제출원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흑백 변환으로 인해 원본 대비 부정확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므로, ePCT<sup>2</sup>를 통해 전자적으로 출원을 하면 국제사무국에서 전용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서 향후 처리 및 공개될 모습 그대로의 출원 본문의 내용을 PDF 또는 DOCX 형식으로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ePCT로 출원하기 전에 변환된 이미지의 내용이 본래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국제사무국에서 변환하여 보게 될 형태로 문서 보기(view document as it will be rendered at the IB)" 미리보기 기능은 국제사무국에서 문서 다운로드 및 공개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변환 프로그램("DocConverter")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수리관청에서 국제사무국에 기록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페이지 이미지에 추가 변환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될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sup>1</sup>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 컬러 도면이라 함은 사진도 포함함.

<sup>2</sup> 특정 수리관청에서 사용하는 다른 전자출원 시스템에서는 컬러 도면의 전자적 제출을 명백히 차단.



DocConverter 미리보기 기능은 아래에서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해당 기능만 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ctdemo.wipo.int/DocConverter/pages/pdfValidator.xhtml>

<https://pctdemo.wipo.int/DocConverter/pages/home.xhtml>

상단 제목 옆의 드롭다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변환기능과 사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ePCT 내에서 동일한 미리보기 기능이 이미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ePCT에 출원 본문 업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수리관청(즉, 이스라엘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의 수리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리관청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출원 본문의 사본을 출원 시의 본래 형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전송하면, 국제사무국은 이를 PATENTSCOPE에 업로드 합니다. 만약 사용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가 국제출원의 일부로 컬러 콘텐츠가 제출되었다는 표시를 제공하면(국제출원이 ePCT, 또는 일부의 경우 PCT-SAFE로 제출된 경우), 이러한 표시에 따라, 공개된 국제출원의 첫 페이지에는, 출원 시의 출원에 컬러(또는 회색톤이 사용되었으면 회색톤)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PATENTSCOPE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가 제공됩니다.

ePC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PCT가 업로드된 출원 본문 파일에 포함된 컬러나 회색톤을 보통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해당 체크박스를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컬러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출하고 있음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용자가 ePCT가 이를 잘못 감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동으로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출원인이 출원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순수 흑백 이미지가, 흑백으로 보이지만 컬러나 회색톤으로 감지되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PCT-SAF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인 경우에만 체크박스에 체크가 가능하고 또 수동으로 체크해야 하는데, 체크를 해도 도면이 흑백이 아닌데 흑백이어야 한다는 확인 경고가 계속 나타납니다.

PATENTSCOPE에는, 서류 탭의 "출원 시의 출원본문(Application Body as Filed)"란 오른쪽에 아래 중 하나의 아이콘이 나타나, 이를 클릭하면 원래 제출된 컬러(또는 회색톤) 콘텐츠를 포함하는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컬러 아이콘은 국제출원에 컬러(또는 회색톤)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 표시가 첫 페이지에 제공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회색 아이콘은 첫 페이지에 해당 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즉, 컬러가 자동적으로 감지되지 않았거나 출원인이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원본 그대로의 도면을 제공하면 컬러 도면을 허용하는 관청에서 국내단계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해당 관청은 자국 국내법 및 국내절차에 따라 국내단계 처리를 위해 허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도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그럼에도



모든 도면은 국제사무국에서 추가 처리 및 공개를 위해 순수 흑백 형식으로 변환되며, 신규 사항의 추가 없이 컬러 이미지를 나타내는 순수 흑백 도면을 필요 시 다른 관청에 제공할 필요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제사무국은 언젠가는 출원 본문에 있는 컬러 콘텐츠의 제출 및 공개를 허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PCT 실무그룹의 틀 내에서 향후 국제단계 동안 컬러 도면을 허용할 가능성에 관한 많은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여러 기술적, 법적, 절차적 고려사항이 해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선택관청, 그리고 PCT 제도 이용자들을 대표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기구들과 정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국내단계 절차에서 여전히 출원 본문에 순수 흑백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정관청이 PATENTSCOPE 에서 제출 원본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도, 신규 사항 추가 없이는 허용할만한 수준의 흑백 버전을 나중에 만들어내기가 여전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시작 예정**

**핀란드 특허청(PRH), PCT 다이렉트 시범 프로젝트(PCT Direct Pilot) 실시**

### **PCT 정보 업데이트**

**AP**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권기구(ARIPO)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CA** 캐나다 (전화번호)

**CU** 쿠바 (수수료)

**EC** 에콰도르 (수수료)

**IL** 이스라엘 (전화번호, 통신수단)

**JP** 일본 (이메일 주소)

**KZ** 카자흐스탄 (위치/우편 주소)

**MX** 멕시코 (이메일 주소)

**RU** 러시아연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통지, 수수료)

**ZA**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인도 특허청)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러시아어 버전)**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19년 5월 | 2019/05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국제사무국 팩스 서비스 운영 중단: 2019년 말 예정

지난 PCT 뉴스레터 2018/12 호에 게재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은 아직까지 국제사무국에 팩스로 서류를 전송하고 있는 출원인들에게 새로운 송부 방식으로 전환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말부터 팩스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팩스로 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국제사무국에 팩스로 국제출원을 포함하여 서류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불가능하며 국제사무국도 팩스를 통한 내용전달을 중단합니다.

국제사무국의 팩스 서비스 운영 중단 결정은,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그리고 지정 또는 선택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들과, 또한 PCT 제도 이용자들을 대표하는 특정 비정부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출원인께서는 가급적 국제출원 및 출원 후 서류를 전자적으로, 예를 들어 ePCT 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관청에서 사용하는 기타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강력 인증과 기타 이점을 제공하는 ePCT 를 사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PCT 를 사용하면, 특히 해당 시 서지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고 여러 확인기능도 제공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사무국 뿐만 아니라,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참여관청 앞으로도 서류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나온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는 일차적으로,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급히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ePCT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출원인이 아직 ePCT 를 사용해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상 수단으로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WIPO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신규 국제출원 및/또는 출원 후 서류 등의 PDF 문서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 서비스와 달리 서류의 안전한 전송은 가능하나, ePCT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추가적 이점이나 인증기능은 없습니다.

ePCT 와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http://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

## PCT 규칙 23 의 2.2(e)에 따른 상충사실의 통지의 철회

### 스위스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권연구소(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는 PCT 규칙 23 의 2.2(a)가 자국 국내법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 있는데(PCT 뉴스레터 2016/11 호 참조), PCT 규칙 23 의 2.2(a)가 2019 년 1 월 1 일부터는 자국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리관청으로서의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권연구소에 출원된 국제출원이 동 관청에 출원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제 동 관청은 선조사 및/또는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출원인의 동의 없이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관련 목록이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 PCT 정보 업데이트

국제조사보고서 및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호주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호주 특허청은, 출원인과 지정관청(또는 해당 시 선택관청)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U) 및 E(AU)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규칙 개정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4 호에 안내된 2019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통합본을 이제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에 이어) 독일어와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로도 각 페이지 오른쪽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de/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de/texts/index.html) (독일어)

[www.wipo.int/pct/en/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영어) (이탈리아 버전은 "기타 언어" 아래 확인)

[www.wipo.int/pct/pt/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pt/texts/index.html) (포르투갈어)

[www.wipo.int/pct/ru/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ru/texts/index.html) (러시아어)

##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2019 년 6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12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를 위해 마련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0](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0)

### 제 3 자 의견서 (한국어)

제 3 자 의견서 제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이제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한국어로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faqs/third\\_party\\_observations.html](http://www.wipo.int/pct/ko/faqs/third_party_observations.html) (한국어)

## PATENTSCOPE 검색시스템

### 그리스 국내 특허문헌

이제 그리스의 국내 특허문헌을 아래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advancedSearch.jsf> (한국어)

해당 문헌 모음에는 현재 100,000 건이 넘는 문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수가 58 개가 되었습니다.

### 대학원생을 위한 PCT 펠로우쉽 프로그램

WIPO 의 PCT 정보시스템국(PCT Information Systems Division)에서는 국제기구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컴퓨터 공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 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펠로우쉽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펠로우와, 운영 및 지원 펠로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펠로우쉽 지원 방법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safe/en/fellowship.html](http://www.wipo.int/pct-safe/en/fellowship.html)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출원 시 비공식 도면의 제출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

**Q:** 열 달 전에 국내특허출원을 했는데, 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출원을 하고 싶습니다. 선출원과 함께 제출한 도면이 매우 비공식적인 것들이라서, 일단 그 도면들 그대로 국제출원을 하고 공식 도면은 작성이 되면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PCT 출원을 하기 전에 공식 도면이 작성되는 것부터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식 도면이 많이 미흡해서 공식 도면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여겨질까봐 염려됩니다.

**A:** 일부 국내관청이나 지역관청에서 자체적인 국내 또는 역내 관행에 따라 보다 비공식적인 도면을 수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대체용 공식 도면을 아무런 문제 없이 수리할 수도 있지만, PCT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제출원 시 공식 도면을 제출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국제출원 시 공식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봉착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잠재적 리스크 중 몇 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출원 후 해당 수리관청에 대체 도면을 제출하는 데 따른 잠재적 문제점 중 하나는, 도면의 개선된 부분의 성질에 따라 새로운 도면이 처음 제출된 도면과 방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방식(formalities) 심사관이 이러한 상황에서 새 도면으로 인해 해당 출원에 신규사항이 추가될까봐 새 도면을 수리하기 꺼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PCT 규칙 26에 따라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이나 수리관청의 방식 심사관은 형식에 따라 출원을 심사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출원대상과 관련한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훈련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조사를 위해 수리관청에서 국제조사기관에 출원을 송부하고 나서야, 관련 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훈련되고, 또 새로운 도면에 신규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출원을 검토합니다.

출원 시의 도면과 대체 도면 간 차이 때문에 PCT 규칙 26에 따라 도면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 PCT 규칙 91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T 규칙 91.1(c)에 규정된, **국제출원일 당시에 "관련 문서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의도되어 있었고 제안된 정정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의도되어 질 수 없었다는 것"이 국제조사기관에게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용) 공식 도면이 국제절차를 위해 수리되지 않으면, 국제조사 심사관은, 그리고 해당 시 국제예비심사 심사관은 비공식 도면의 품질이 매우 낮은 경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고 조사/심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사무국은 공식 도면이 아닌, 출원 시의 비공식 도면이 포함된 국제출원을 공개하게 되고,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은 국내/지역단계 진입 시 비공식 도면을 조회하게 됩니다.

공식 도면을 국제공개 전에 수리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안은 PCT 제 34 조제 2 항(b)에 따른 도면의 보정과 함께 국제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정은 "어떠한 다른 것도 의도되어 질 수 없었다"는 PCT 규칙 91.1(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국제조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도 관련 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훈련받았고 새로운 도면에 신규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위치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새로운 대상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리고 다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공식 도면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로 포함시킵니다. 부속서에 포함된 보정 도면은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도 (비공식 도면이 여전히 국제출원의 일부로서 공개) PATENTSCOPE 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또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다만 이는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PCT 규칙 73.2(a)).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국제예비심사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도면을 수리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성을 연장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PCT 제 34 조에 따라 국제단계에서 도면을 보정하지 않으면, 국내 또는 지역단계 진입 시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은 공개 시의 도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은 PCT 규칙 52 또는 78에 따라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에 보정 도면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보정 도면은 관련 기한 내에 수리되는 경우 특허(또는 해당 시 다른 형태의 보호)의 허여 결정 시 고려됩니다. 다만 출원인이 국내 또는 지역단계 진입을 희망하는 각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에



보정을 제출하는 것은, 출원 전에 보정을 하거나 국제단계 중에 보정을 하는 것보다 보통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제출원의 일부로서 제출되는 모든 도면은 PCT 규칙 11.10 부터 11.13 에 규정된 도면에 관한 PCT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도면에 관한 방식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5.131 부터 5.160 에도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수리관청은 제출된 도면이 PCT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요청서 (서식 PCT/RO/106)를 송부하여 해당 요청서에 나온 기한 내에(또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 도면이 전달된다는 전제 하에 수리관청에서 허락한 연장된 기한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도면의 흠결을 보정하지 못하고, PCT 규칙 26.5 에 따라 수리관청이 해당 국제출원이 PCT 규칙 11 의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수리관청은 이론적으로 해당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관청이 도면상의 결함 때문에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출원인은 사실상 PCT 규칙 26.5 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이에 따르면 국제출원은, PCT 규칙 11 에서 정한 형식상의 요건을 정형화된 국제공개에 적합할 정도로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출원인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결론짓자면, 출원 시 국제출원에 공식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좋지만, 국제출원 전에 공식 도면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비공식 도면으로 출원을 하는 것(그리고 나중에 공식 도면을 작성해 대체하는 것)이 12 개월의 우선권기간 내에 출원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도면과 형식상의 요건 충족에 관한 아래의 지난 유용한 도움말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12005.html](http://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12005.html)

[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62007.html](http://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62007.html)

[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32016.html](http://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32016.html)

ePCT 에는 전용 미리보기 기능이 있어 이를 통해 국제사무국에서 향후 처리 및 공개될 모습 그대로의 도면을 PDF 또는 DOCX 형식으로 제출 전에 미리, 로그인 할 필요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한 기능은 아래와 같이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4 호의 유용한 도움말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19/4\\_2019.pdf](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19/4_2019.pdf) (한국어)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앤티가 바부다 지식재산 및 상무청(Antigua and Barbuda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erce Office), 수리관청의 기능 국제사무국에 위임**

### PCT 정보 업데이트

**AG** 앤티가 바부다 (일반 정보)

**BN** 브루나이 다루살람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BY** 벨라루스 (국가안보 규정, 수수료)

**DO** 도미니카 공화국 (수수료)

**JO** 요르단 (수수료)

**KZ** 카자흐스탄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번호)

**PH** 필리핀 (관청명, 수수료, 위임장 면제 관련 정보,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필리핀 관청에 관한 정보)

조사료 (이집트 특허청, 인도 특허청, 필리핀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

예비심사료 (필리핀 특허청)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19년 6월 | 2019/06호

## PCT 웨비나(Webinar) 동영상 강의 추가 안내

아래 주제들에 대한 한국어 동영상 및 강의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ePCT 소개, WIPO 계정 생성, 강력 인증 없이 ePCT 사용하기, 강력 인증 설정방법, WIPO 계정-특허고객번호 연계, ePCT 화면구성, PCT 출원 접근권한 획득, 접근권한 관리, 부가 기능
- ePCT 이용시 자주 하는 질문 (RO/KR)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RO/KR)
- ePCT 를 통한 중간서류 제출

해당 웨비나와 기존 웨비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한국어)

\* WIPO 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위 강의 내용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WIPO([pct.team1@wipo.int](mailto:pct.team1@wipo.int))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일반에 대한 문의는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로 보내시면 됩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PCT 실무그룹

제 12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가 2019 년 6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CT 규칙 개정사항 합의

실무그룹은 아래의 PCT 규칙 개정사항을 제출하여 2019 년 9/10 월 회의에서 PCT 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국제출원의 잘못 제출된 요소 및 부분의 경우 인용에 의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규정(문서 PCT/WG/12/9 및 의장의 요약서(문서 PCT/WG/12/24)의 부속서 참조)
- 관청이 수납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IB)을 통해 다른 관청의 수입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문서 PCT/WG/12/20 참조)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동 기관의 파일에 있는 특정 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송부(문서 PCT/WG/12/12 참조). 상기 사본은 국제사무국이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관청이 불시의 정전이나 예정된 정비와 같은 이유로 그 관청에서 허용된 전자적 통신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문서 PCT/WG/12/17 참조)
- 국제단계에서 PCT 규칙 4.11 에 규정된 출원서의 표시사항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지정국에서 다음을 위한 출원으로 취급될 것을 희망한다는 표시사항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 추가증(certificate of addition), 추가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이나 추가실용증(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 또는
  -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출원

(문서 PCT/WG/12/8 참조)

### 전자서비스

실무그룹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에서 PCT 출원의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서비스의 향후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문서 PCT/WG/12/10 참조).

실무그룹은, 국제사무국이 PCT 하에서 팩스로 송수신하는 것을 중단할 것(PCT 뉴스레터 2019/05 호 참조)과 국제사무국과의 통신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과 더불어 통신 장애의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관청 및 사용자 그룹이 갖추도록 이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문서 PCT/WG/12/23 참조).

## PCT 수수료

실무그룹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PCT 수수료 감면의 도입 문제에 대해,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의 요약을 확인하였습니다(문서 PCT/WG/12/3 참조). 또한 대학 출원인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제 11 차 PCT 실무그룹 회의에서 브라질이 한 제안의 이행 방안을 다룬 문서를 수수료표 개정안(문서 PCT/WG/12/21 참조)과 더불어 논의하였습니다(문서 PCT/WG/11/18 Rev.(영어) 및 18(기타 언어) 참조). 그러나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국내관청과 국제사무국 간의 PCT 수수료 거래를 위한 "네팅 구조(netting structure)"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8 년에 시작한 특정 PCT 수수료의 네팅 시범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는 시범사업의 재정 효과에 관한 WIPO 내부감독국(Internal Oversight Division)의 분석과 더불어, 네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는 요청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은 관청들의 설문조사응답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문서 PCT/WG/12/19 참조). 국제사무국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국제사무국과 관청이 갖는 이점을 고려하여 국제사무국을 통한 수수료 송금에 대하여 PCT 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실무그룹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문서 PCT/WG/12/20 참조).

실무그룹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수수료표의 항목 5(a) 및 (b)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 목적상 개정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관한 잠정 정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무그룹은 이 목록에 포함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총회에 권고하고 그 기준을 총회가 5 년 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문서 PCT/WG/12/11 참조).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의 지정 및 수리관청의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선언

실무그룹은, 수리관청이 그 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을 조사하고 심사할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지정하는 단계를 없애고 대신에 출원인이 국제조사를 위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도의 제안을 논의하였습니다(문서 PCT/WG/12/18 참조).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하여 본 회의 중에 제시된 의견과 추가 협의 내용을 고려하여, 2020 년 초에 개최될 다음 국제기관회의(MIA)를 위한 자료를 마련해줄 것을 인도 대표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심사관 훈련

실무그룹은 제공관청 또는 수혜관청을 불문하고, 관청에서 수행하는 실제 특허 훈련활동에 대한 연례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향후 설문조사는 격년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설문조사는 2021 년에 실시됩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이 이러닝(e-learning) 자료와 관련한 지식재산(IP)관청의 정책에 대하여 1 회성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안도 수용하였습니다(문서 PCT/WG/12/6 참조).

실무그룹은 수혜관청과 제공관청 간의 실제심사관 훈련의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실제특허심사관을 위한 기술역량 프레임워크 및 학습관리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한 경과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문서 PCT/WG/12/5 참조).

## 서열목록

실무그룹은 유럽 특허청이 WIPO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신설한 서열목록 전담반의 대표로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문서 PCT/WG/12/14 참조). 그리고 PCT 규칙 및 행정지침에 대한 예비 개정 초안을 포함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국제출원에 대한 WIPO 표준 ST.26의 시행에 대하여 논의하는 문서를 검토하였고, 국제사무국에게 WIPO 표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문서 PCT/WG/12/13 참조).

## 기타 사항

실무그룹은 다음과 관련한 보고서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 제 26 차 PCT 국제기관회의(문서 PCT/WG/12/2 및 PCT 뉴스레터 2019/03 호 참조)
- PCT 에 따른 기술원조 조정(문서 PCT/WG/12/22 참조)
- 발명자 원조 프로그램(문서 PCT/WG/12/4 참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개인 및 개체의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감시(문서 PCT/WG/12/7 참조)
- PCT 최소 문헌 전담반(문서 PCT/WG/12/16 참조), 그리고
- 2018년 7월에 시작하여 3년간 진행될 IP5 관청들 간 협력심사에 대한 제 3 차 시범사업의 운영단계. 영어 이외에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일본어로 된 출원도 주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시범사업에서 접수 가능하며, 한국어로 된 출원도 운영 2년차를 기점으로 시범사업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문서 PCT/WG/12/15 및 아래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참조).

## 요약서 및 회의 자료

의장의 요약서(문서 PCT/WG/12/24)는 아래 WIPO 웹페이지에서 실무그룹 회의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0](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0)

회의에 관한 보고서 초안도 적절한 때에 상기 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PCT 규칙과 PCT 서식의 개정사항

PCT 동맹 총회는 2018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50 차 회의에서 2019년 7월 1일에 발효될 PCT 규칙 69.1(a)의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조하시고, 상기 개정사항을 기술한 PPT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PCT/IPEA/401)과 그 주석도 개정하였습니다.<sup>1</sup>

1 출원인이 PCT 규칙 54 의 2.1(a)에 의한 해당 적용 기한의 만료 전까지 국제예비심사의 착수를 연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희망할 수 있도록 제 4 기재란의 4 번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출원서 서식(PCT/RO/101) 및 국제조사기관과 보충적 국제조사의 수행을 맡은 국제조사기관에 관련된 아래 서식도 2019 년 7 월 1 일자로 개정됩니다.

- PCT/ISA/201(국제형조사보고서)
- PCT/ISA/206(추가수수료 및 이의신청료(해당하는 경우) 납부 요구서)
- PCT/ISA/210(국제조사보고서)
- PCT/SISA/501(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개정 서식은 아래 웹사이트의 "2019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forms/](http://www.wipo.int/pct/en/forms/)

또한 PCT 행정지침과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여러 부분들을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사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72)을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pct/en/circulars/](http://www.wipo.int/pct/en/circulars/)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서는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는 모든 IP5 관청들이 출원인의 명시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ISA)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참여관청은 첫 해(2018 년 7 월부터 2019 년 6 월)에 주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 건의 국제출원을, 두 번째 해(2019 년 7 월부터 2020 년 6 월)에 이와 유사한 양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참여관청 소식

### 대한민국 특허청

협력심사 시범사업에서 주심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은 먼저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 년 6 월 28 일부터는 한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출원이 시범사업에 잠정적으로 수리되면, 해당 출원의 영어 번역문을 잠정적 수리의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ipo.go.kr/en/BoardApp/UEngBodApp?c=1003&board\\_id=kiponews&catmenu=ek06\\_01\\_01&seq=1687](http://www.kipo.go.kr/en/BoardApp/UEngBodApp?c=1003&board_id=kiponews&catmenu=ek06_01_01&seq=1687)

## 2018 년 PCT 통계자료

### 2019 년 PCT 연례보고서

2019 년 PCT 연례보고서에는 2018 년 PCT 관련 활동 및 변동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 년 PCT 출원(상위 출원국/상위 출원인/기술분야별 출원 포함)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국제특허제도인 PCT 의 운영실적 및 2017 년(확보 가능한 최신 연도)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PCT 연례보고서의 특별 주제는 "특허협력조약 40 주년"으로, PCT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장기 추세, 신규 핵심 세계경제주체의 부상 및 신기술의 발전을 분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출원인들이 PCT 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는지와 PCT 를 통해 어느 나라와 지역에서 출원인들이 특허 보호를 가장 많이 신청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1978 년 이래 발생한 PCT 법적 틀의 주된 변화를 요약하였습니다.

PCT 연례보고서 영문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activity/index.html](http://www.wipo.int/pct/en/activity/index.html)

PCT 연례보고서 요약본이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9 개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뉴스레터 7 월호 및 8 월호 통합

PCT 뉴스레터 다음 호는 7-8 월 통합호로 8 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6 월호와 7-8 월 통합호 발행 사이에 PCT 사용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PCT 관련 소식이 생기면 PCT 이메일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PCT 뉴스레터가 발행될 때 이를 PCT 사용자들에게 통지하거나 필요 시 그때그때 중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아직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3.wipo.int/newsletters/en/#pct\\_newsletter](https://www3.wipo.int/newsletters/en/#pct_newsletter)

7-8 월 통합호 발행 전에 PCT 세미나 일정이나 PCT 수수료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내용은 아래에 각각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http://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

[www.wipo.int/pct/en/fees.pdf](http://www.wipo.int/pct/en/fees.pdf)

###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2019 년 9 월 17 일과 18 일에 제네바에 소재한 WIP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허 및 기술 섹터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진행하고 특허관리인,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 및 기타 PCT 제도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 및 추가정보를 위한 링크는 조만간 PCT 세미나 일정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 조사료(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2019 년 8 월 1 일부터, 아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 상당액이 변동됩니다.

일본 특허청.....	CHF, KRW
대한민국 특허청 .....	NZD, SGD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	USD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BR, JP, KR) 업데이트)

###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일본 특허청)

2019 년 8 월 1 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인 일본 특허청에 납부할 취급료 금액이 변동됩니다. 변동 후 금액은 JPY 21,800 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JP)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파워포인트(PPT) 자료

2019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PCT 조약규칙 개정사항을 기술한 PPT 자료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wipo.int/pct/en/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en/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영어)
- [www.wipo.int/pct/fr/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fr/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프랑스어)
- [www.wipo.int/pct/de/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de/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독일어)
- [www.wipo.int/pct/es/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es/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스페인어)

다른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국제공개 전 지정관청이 국제출원 사본 입수

### 대한민국 특허청

2019 년 5 월 20 일부터는, 출원인이 국제공개 전에 국내단계의 조기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특허청(DO/KR)이 국제출원의 사본과 기타 관련 문서를 ePCT 웹서비스를 통해 국제사무국(IB)으로부터 직접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연락하여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그러한 문서를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예비심사 착수 시기(PCT 규칙 69.1(a) 개정 후)

**질문:**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기한 만료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19 년 7 월 1 일자로 PCT 규칙 69.1(a)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가 조기에 착수되면, PCT 조약 제 34 조에 따라 국제출원의 보정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까?

**답변:** 2019 년 7 월 1 일부터 하는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의 조기 착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PCT 규칙 54 의 2.1(a)에 따른 적용 기한의 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행과는 달리 그 기한의 만료 전에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일지라도, 개정 PCT 규칙 69.1(a)에 따라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기한 만료 전까지 국제예비심사의 착수를 지연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법적 권리 및 선택사항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PCT 규칙 54 의 2.1 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기한은 아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때입니다.

- 국제조사보고서(ISR)(또는 해당하는 경우, PCT 조약 제 17 조(2)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국제조사기관(ISA)의 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 개월, 또는
- 우선일부부터 22 개월

2019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어 그 날부터 제출되는 모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적용되는 개정 PCT 규칙 69.1(a)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들을 모두 수리한 때에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합니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 국제예비심사를 위해 납부할 수수료, 그리고
-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PCT 조약 제 17 조(2)에 따른 선언서, 및 PCT 규칙 43 의 2.1 에 따라 작성된 견해서

단, 출원인이 PCT 규칙 54 의 2.1(a)에 따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국제예비심사의 착수를 연기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기한 및/또는 해당 수수료 납부 기한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는 경우 또는 국제조사기관(ISA)이 국제조사보고서(또는 선언서)와 견해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착수가 지연되고 출원인은 PCT 조약 제 34 조(2)(b)에 따른 보정서를 준비할 시간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조기에 제출하더라도, 2019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서식 PCT/IPEA/401)의 해당 체크박스(제 4 기재란 4 번 항목)에 체크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기한 만료까지 국제예비심사의 착수를 지연해 달라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PCT 조약 제 34 조에 따른 출원인의 보정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PCT 규칙 54 의 2.1(a)에 따른 기한 만료가 임박했으며, 출원인이 PCT 조약 제 34 조에 따른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또는 도면의 보정사항에 기초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착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인은 제 4 기재란 1 번 항목<sup>2</sup>의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PCT 조약 제 34 조에 따른 보정사항에 기초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착수되기를 희망한다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PCT 조약 제 34 조에 따른 보정사항에 기초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착수되기를 희망한다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표시하였으나 사실상 그러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PCT 규칙 60.1(g)에 따라 (서식 PCT/IPEA/431 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은 보정서를 보정서제출요구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출원인에게 요청하고, 해당 보정서를 받기 전이나 보정서제출요구서에 정해진 기한의 만료 전에는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입니다(PCT 규칙 69.1(e)).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에 할애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출원인이 앞서 말한 상황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그러한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수수료, 국제조사보고서(또는 PCT 조약 제 17 조(2)에 따른 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수리하는 즉시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할 수 있고, (PCT 규칙 55.2 에 따라 요구되는 번역문이 제출된 것을 전제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일단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시작하면 어떠한 (추가) 보정사항도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PCT 규칙 66.4 의 2).

출원인의 법적 권리 및 선택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PCT 규칙 69.1(a)의 개정으로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출원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도 현재와 비교하여 더 이른 시기에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는 데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출원인과 국제예비심사기관 모두에게 아래와 같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과 심사관 간에 소통할 시간이 늘어나서 출원인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관에게는 명확한 정보를 입수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함
- 출원인이 두 번째 견해서를 입수하고 그 견해서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남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및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제 2 장)의 질이 개선됨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및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게 되면, PCT-PPH 및 글로벌 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이 각 관청들 간에 존재하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단계와 지역단계에서 국제출원의 처리를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로,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살펴보고 해당 국제출원을 더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급적 최대한 빨리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보정서를 준비할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선호하고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가 작성되기 전에

<sup>2</sup> 어떠한 경우든, 국제예비심사의 착수가 출원 시의 요소에 기초해야 하는지, PCT 조약 제 34 조에 따라 보정된 요소에 기초해야 하는지, 또는 PCT 조약 제 19 조에 따라 보정된 청구범위(오직 청구범위의 경우에만 해당)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에 제 4 기재란 1 번 항목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착수를 지연해 달라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출원 및 처리

에콰도르와 아일랜드: 에콰도르 지식재산기관과 아일랜드 특허청이 전자 형식으로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개시 예정

**PCT-SAFE** 출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관청들(오스트리아 특허청)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신규 일방향 PCT-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아르헨티나-미국)

### PCT 정보 업데이트

**BY** 벨라루스(수수료)

**EC** 에콰도르(전자출원)

**IE** 아일랜드(전자출원)

**IL** 이스라엘(통신수단)

**JP** 일본(우편주소, 수수료)

**KE** 케냐(우선권 회복 신청 관련 적용 기준, 수수료)

**KN** 세인트키츠네비스(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KZ** 카자흐스탄(국가안보 규정)

**LA**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위치 및 우편주소)

**RS** 세르비아(수수료)

**SK** 슬로바키아(관청명, 국제형조사 관련 규정, 국제공개 후 임시 보호,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는 때)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협정(필리핀)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9년 7-8월 | 2019/07-08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특정 PCT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 노르웨이 (PCT 규칙 26 의 2.3(j), 49 의 3.1(g) 및 49 의 3.2(h))

수리관청(RO/NO) 및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DO/NO)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르웨이 산업재산청은 아래와 같이 자국 국내법과의 상충사실에 대한 통지를 2019년 7월 1일부로 철회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PCT 규칙 26 의 2.3(j)에 따른 통지(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PCT 뉴스레터 2006/06 호 4 페이지 참조)
- PCT 규칙 49 의 3.1(g)에 따른 통지(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PCT 뉴스레터 2006/06 호 4 페이지 참조)
- PCT 규칙 49 의 3.2(h)에 따른 통지(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PCT 뉴스레터 2006/06 호 5 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해당 RO/NO 와 DO/NO 는 2019년 7월 1일부로 아래의 PCT 규칙들을 각각 적용합니다.

- PCT 규칙 26 의 2.3(a) 내지 (i)
- PCT 규칙 49 의 3.1(a) 내지 (d)
- PCT 규칙 49 의 3.2(a) 내지 (g)

이는 아래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RO/NO 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우선권회복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2019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DO/NO 는 우선권회복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조건이 충족된 경우, 수리관청(RO)의 역할을 수행하는 타 관청이 내린 우선권회복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나아가, 수리관청(RO)과 지정관청(DO)의 역할을 하는 노르웨이 관청은, 우선권회복 신청에 대하여 "비고의적"의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료는 NOK 3,000 라고, 각각 PCT 규칙 26 의 2.3(i) 및 49 의 3.2(g)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NO) 및 국내편 요약(NO) 부분과, "우선권회복"과 "PCT 유보, 선언, 통보 및 상충" 표들이 각각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 (한국어)

[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영어)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는데, 이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이 출원인의 구체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모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1 차 연도(2018 년 7 월-2019 년 6 월)와 비슷하게 2 차 연도(2019 년 7 월-2020 년 6 월)에도 각 참여관청은 주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 건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참여관청 소식

#### 중국 국가지식산업국(중국 특허청, CNIPA)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2 호에서는 중국 특허청이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 40 건의 한도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중국 특허청은 현재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중국어 또는 영어로 출원된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중국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cnipa.gov.cn/ztlz/zlscgslpphzi/csexm/1135632.htm](http://www.cnipa.gov.cn/ztlz/zlscgslpphzi/csexm/1135632.htm)

#### 유럽 특허청(EPO)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9 호에서는 유럽 특허청이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 40 건의 할당량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유럽 특허청은 2019 년 7 월 1 일부로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외에 영어로 된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7/a65.html](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7/a65.html)

<sup>1</sup>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및 미국 특허상표청

## 미국 특허상표청(미국 특허청, USPTO)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2 호에서는 미국 특허청이 국제출원 50 건의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미국 특허청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PTO/bulletins/22b9810>

협력심사 시범사업 관련 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filing/cse.html](http://www.wipo.int/pct/en/filing/cse.html)

##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 2019 년 9 월 6 일자 공개

2019 년 9 월 5 일 목요일이 WIPO 휴일인 관계로, 원래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및 모든 공문(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이 다음날인 2019 년 9 월 6 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19 년 8 월 20 일 화요일 자정(중앙유럽 표준시(CE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PCT-SAFE 업데이트

###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9 년 7 월 1 일, 버전 3.51.088.264) 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PCT 정보 업데이트

### JP 일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수수료)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특허청은 2019 년 9 월 1 일부터 국제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의 감면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초소기업(micro enterprises), 교육기관(academic institutions)이 일본어로 출원하거나, PCT 규칙 12.3 에 의해 국제조사용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 감면됩니다. 상기 수수료 변경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JP) 및 E (JP)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감면 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jpo.go.jp/system/patent/pct/tesuryo/pct\\_keigen\\_shinsei.html](http://www.jpo.go.jp/system/patent/pct/tesuryo/pct_keigen_shinsei.html)

## KR 대한민국 (수수료)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각각 국제조사보고서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해당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심사청구료가 2019년 7월 9일부터 70% 감면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KR) 업데이트)

## 조사료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납부되는 수수료에 대해 2019년 9월 1일부로 적용되는 감면에 관한 내용을 상기 PCT 정보 업데이트의 "일본"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미달러(USD)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상기 수수료액들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JP 및 KR) 업데이트)

## 예비심사료 (일본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예비심사에 대해 납부되는 수수료에 대해 2019년 9월 1일부로 적용되는 감면에 관한 내용을 상기 PCT 정보 업데이트의 "일본"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사보고서 및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대한민국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은, 출원인과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와 E (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지식재산청: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휴무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19년 7월 31일 수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3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공식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나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19년 8월 5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www.ipophil.gov.ph/news/announcement-ipophl-will-be-closed-for-a-3-day-workshop/](http://www.ipophil.gov.ph/news/announcement-ipophl-will-be-closed-for-a-3-day-workshop/)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2019 년 7 월 26 일, 29 일 및 30 일 휴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2019 년 7 월 29 일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새 주소는 상기 PCT 정보 업데이트란 참조). 새 주소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해당 관청은 2019 년 7 월 26 일 금요일부터 7 월 30 일 화요일까지 공식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 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나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7 월 31 일 수요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www.ipos.gov.sg/docs/default-source/resources-library/ipos-relocation.pdf](http://www.ipos.gov.sg/docs/default-source/resources-library/ipos-relocation.pdf)

##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책자)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4 호에서 2019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문을 P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데, 이제 업데이트된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WIPO Publication 274) 종이 책자를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아래 주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25&plang=EN](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25&plang=EN)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출원인 가이드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및 "국내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National Phase)" 부분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버전이, 2019 년 7 월 1 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 및 기타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영어)

[www.wipo.int/pct/fr/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fr/guide/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s/guide/index.html) (스페인어)

[www.wipo.int/pct/ru/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ru/guide/index.html) (러시아어)

### 파워포인트(PPT) 자료

2019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을 설명한 PPT 자료를 아래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에 이어) 이제 중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zh/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zh/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기타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법조문 색인(PCT Legal Text Index)

PCT 조항, 규칙,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 서식 및 각종 PCT 가이드라인에 대한 참고사항이 정리된 PCT 법조문 색인에 2019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된 법조문의 참고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색인은 아래에서 영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pdf/legal\\_index.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legal_index.pdf)

### 출원서 서식

이제 2019 년 7 월 버전의 출원서 작성 샘플(PCT/RO/101)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각 제공됩니다.

[www.wipo.int/pct/en/forms/request/filled\\_request.pdf](http://www.wipo.int/pct/en/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영어)

[www.wipo.int/pct/fr/forms/request/filled\\_request.pdf](http://www.wipo.int/pct/fr/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de/forms/request/filled\\_request.pdf](http://www.wipo.int/pct/de/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독일어)

[www.wipo.int/pct/ja/forms/request/filled\\_request.pdf](http://www.wipo.int/pct/ja/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일본어)

[www.wipo.int/pct/ru/forms/request/filled\\_request.pdf](http://www.wipo.int/pct/ru/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러시아어)

[www.wipo.int/pct/es/forms/request/filled\\_request.pdf](http://www.wipo.int/pct/es/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스페인어)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이제 2019 년 7 월 버전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샘플(PCT/IPEA/401)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각 제공됩니다.

[www.wipo.int/pct/en/forms/demand/filled\\_demand.pdf](http://www.wipo.int/pct/en/forms/demand/filled_demand.pdf) (영어)

[www.wipo.int/pct/fr/forms/demand/filled\\_demand.pdf](http://www.wipo.int/pct/fr/forms/demand/filled_demand.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de/forms/demand/filled\\_demand.pdf](http://www.wipo.int/pct/de/forms/demand/filled_demand.pdf) (독일어)

[www.wipo.int/pct/ja/forms/demand/filled\\_demand.pdf](http://www.wipo.int/pct/ja/forms/demand/filled_demand.pdf) (일본어)

[www.wipo.int/pct/ru/forms/demand/filled\\_demand.pdf](http://www.wipo.int/pct/ru/forms/demand/filled_demand.pdf) (러시아어)

[www.wipo.int/pct/es/forms/demand/filled\\_demand.pdf](http://www.wipo.int/pct/es/forms/demand/filled_demand.pdf) (스페인어)

### 한국어로 제공되는 추가 자료

이제 "우선권회복" 표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

##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기 공지된 대로,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체네바 WIPO 본부에서 2019 년 9 월 17-18 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해당 과정은 WIPO 특허 및 기술부(Patents and Technology Sector)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진행하며, 아래 세션들을 제공합니다.

- 국제 및 국내단계에서의 모범사례
- 특정 관청들에서의 국내단계에 관한 질의응답
- 최근 및 향후 PCT 변경사항
- ePCT 로 PCT 출원 및 관리하기(실습기회 제공)

해당 과정은 특허관리인,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 및 기타 PCT 제도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미나는 등록비가 없으며 참여인원이 50 명으로 제한됩니다. 등록기한은 2019 년 9 월 6 일입니다. 온라인 등록방법 및 세미나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3186](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3186)

세미나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주소로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

## PATENTSCOPE 검색시스템

### 신규 사용자 계정

이제 PATENTSCOPE 및 기타 WIPO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다 안전한 계정이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PATENTSCOPE 를 포함한 여러 WIPO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접속하고, 제 3 자 정보제공(third party observations) 시스템에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19/news\\_0004.html](http://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19/news_0004.html)

###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 국내 특허문헌

이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국내 특허문헌을 아래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advancedSearch.jsf> (한국어)

이로써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수가 60 개가 되었습니다.

### PATENTSCOPE 인터페이스 개선

PATENTSCOPE 인터페이스가 여러가지로 개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atentscope/en/docs/patentscope\\_news\\_july\\_150719.pdf](http://www.wipo.int/patentscope/en/docs/patentscope_news_july_150719.pdf)

## WIPO 에서 새로운 IP 포털 출시

WIPO 는 올 가을 새로운 IP 포털을 출시하여 WIPO 의 모든 온라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WIPO 의 서비스를 간소화된 하나의 포털로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WIPO 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 업무 프로세스들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사용자께서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IP 포털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ortal/en/news/2019/article\\_0029.html](http://www.wipo.int/portal/en/news/2019/article_0029.html)

## WIPO 펠(Pearl) 업데이트

WIPO 의 다국어 용어 포털인 WIPO 펠에서는 PCT 출원서 및 국내특허문헌에서 파생된 수많은 과학기술 용어와 함께 주요 PCT 법률 용어를 무료로, PCT 공개언어 10 개 모두로 제공합니다. WIPO 펠은 용어가 이들 언어 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도록 하며, 과학기술 지식을 보다 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 개선된 화면

WIPO 펠 용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이전의 기능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며, 새 디자인이 WIPO 의 특허출원용 ePCT 시스템에 기반하여 ePCT 이용자께서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사용에 맞게 웹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새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wipopearl@wipo.int](mailto:wipopearl@wipo.int) 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 언어

WIPO 펠에서는 이제 아랍어까지 제공됨으로써 WIPO 펠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10 개 언어가 제공 가능합니다. 사용자께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선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WIPO 펠 데이터베이스에는 WIPO-PCT 언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17,000 개의 새로운 특허용어가 업데이트 되어, 현재 178,000 개가 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18,000 개(또는 80%)가 넘는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은 "개념도 검색(Concept Map Search)"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다른 관계들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검증되기 전 단계의 "개념 클라우드(concept clouds)"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학과의 협업

아래 대학의 학생들이 제공한 1,300 개가 넘는 다언어 용어가 WIPO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근 추가되었습니다: 코르도바 국립대학교(the National University of Córdoba, 아르헨티나), 그르노블 대학교(the University of Grenoble Alpes, 프랑스), 더블린시티 대학교(Dublin City University, 아일랜드), 볼로냐 대학교(the University of Bologna at Forlì, 이탈리아), 아스트라한 국립대학교(Astrakhan State University, 러시아 연방), 맨체스터 대학교(the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the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및 일리노이 대학교(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미국). 이와 같은 용어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wipopearl@wipo.in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IPO 펄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reference/ko/wipopearl/index.html> (한국어)

## 유용한 도움말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서의 동일(同日)자 보정(same day corrections)

**Q:** 방금 ePCT 를 통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했는데, 출원을 제출하고 나서야 출원에 도면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국제출원의 나머지 요소들을 제출한 그 날 안으로 출원에 도면을 추가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체 출원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오늘 날짜가 국제출원일로 인정받게 하고 싶습니다.

**A:** 오늘 날짜가 국제출원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출원의 나머지 부분과 같은 날짜에 도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PCT 제 11 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 날이 지나서 누락된 도면을 제출하면, 수리관청에서는 도면 제출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합니다(PCT 제 14 조제 2 항)<sup>2</sup>

다행히 처음 출원에서 도면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당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ePCT 를 통해 국제출원을 할 때에는, ePCT 내 전용 기능을 사용해 같은 날에 실수를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RO/IB)에 제출된 것으로 가정하지만, ePCT 를 통해 출원된 국제출원을 수리하는 일부 다른 수리관청에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sup>3</sup>

ePCT 로 국제출원을 한 후, 출원 시 누락되어 국제출원일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또는 도면 등)를 "당일 보정서"로 해당 수리관청에 적용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자정까지 추가하여 그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동일자 보정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동일자 보정을 할 때에는, 이전 출원은 완전히 무시할 것을 명시하고 전체 출원을 (누락된 도면을 포함하여) 재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국제출원이 완성되도록 누락된 도면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을 포함한 출원을 새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도면만 제출하든지 간에, 두 경우 모두 오늘 날짜로 수리관청에 접수되고 PCT 제 11 조에 따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오늘 날짜를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PCT 에서 누락된 문서를 업로드하려면 드롭다운 메뉴(국제출원번호 옆 아래방향 화살표)에서 "당일 보정서(same day correction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규 출원된 국제출원에 누락된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 액션이 열리고 "당일 보정서에 대한

<sup>2</sup> 누락된 도면의 제출기한은 국제출원을 구성하는 나머지 문서가 처음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2 개월입니다(PCT 규칙 20.7). PCT 규칙 20.6 에 따라 출원인이 PCT 규칙 4.18 의 규정에 의하여 누락 부분이 인용에 의하여 보완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누락된 도면이 해당 기한 내 제출되면 도면의 접수일이 국제출원일이 됩니다(본 유용한 도움말 마지막 문단 참조).

<sup>3</sup> ePCT 의 동일 보정 기능은 캐나다, 이스라엘 및 미국의 수리관청들에 대해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관청들의 전자출원 시스템에 업로드 하기 위해 ePCT 를 통해 zip 파일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해당 관청들에 ePCT 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잔여 시간(time remaining for same day corrections)"이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수리관청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말합니다. 해당 시한이 지나면 이 전용 기능으로 동일자 보정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제출원을 제출한 수리관청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액션에 서명합니다. 동일자 보정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주어진 칸에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자 보정에 해당되는 문서가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표지가 생성됩니다.

동일자 보정 기능은, 어떠한 요소나 부분이 누락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해당 수리관청이 잘못 제출된 문서를 맞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허용한다면 문서를 잘못 제출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잘못 제출한 경우).

ePCT를 사용하면, 기제출된 문서의 사본을 사후에 다운로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출 전의 국제출원 초안의 사본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 전에 출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모든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또는 모든 요소가 해당 출원에 제대로 맞는 것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자 보정 시에는 "초안 저장(Save draft)"기능이 없습니다.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당일이 지나서 알게되면, PCT 규칙 20.6에서는, 국제출원일을 변경하지 않고, 출원인이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국제출원에서 인용에 의하여 보완되었는지 PCT 규칙 20.7에 따른 해당 기한 내에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해당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이전에 제출된 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고, 기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칙과 자국 국내법의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IB)에 통지한 소수의 관청들의 경우에는<sup>4</sup>, 누락된 요소나 부분은 국제출원일에 접수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07/05호와 2015/07-08호에 각각 게재된 유용한 도움말과, 아래의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6.024 내지 6.03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ePCT의 동일자 보정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12](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12)

<sup>4</sup> 해당 관청들은 PCT 규칙 20.8(a) 및 (b)에 따라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sup>5</sup> (역주) 대한민국 특허청은 해당 규칙과 자국 국내법의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출원하실 경우 인용에 의한 보완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PCT 수수료 감면 대상

#### PCT 정보 업데이트

**AG** 앤티가바부다 (국내단계 진입 요건 요약)

**CO** 콜롬비아 (이메일 주소, 문서 우편 발송의 증거)

**GB** 영국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IN** 인도 (위치 및 우편주소, 국제출원 또는 번역문의 사본 제출)

**IS** 아이슬란드 (관청명, 이메일/인터넷 주소)

**JP** 일본 (수리관청 수수료)

**KN** 세인트키츠네비스 (일반적인 내용, 수리관청이자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관청의 요건에 관한 내용)

**PA** 파나마 (수수료)

**SG** 싱가포르 (위치/우편 주소)

**UA** 우크라이나 (수수료)

조사료 (이집트 특허청,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서 서식 (아랍어)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9년 9월 | 2019/09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WIPO IP 포털 출시

WIPO IP 포털(PCT 뉴스레터 2019/07-08 호 한국어판 8 페이지에 게재)이 2019년 9월 17일 출시되었습니다. 새로 출시된 WIPO IP 포털은 WIPO에서 제공하는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고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WIPO IP 포털은 WIPO의 모든 온라인 지식재산(IP) 서비스(예를 들어, 특허, 상표 및 산업디자인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두고 동일한 WIPO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여러 서비스를 자유롭게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업무 프로세스들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WIPO 서비스 이용 방식도 변함 없지만, WIPO IP 포털은 다음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 통일된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WIPO IP 포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계없이 다른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간 이동도 용이합니다.
- WIPO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WIPO IP 포털에서 위젯에 기반한 새로운 대시보드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다양한 위젯으로 대시보드 설정 및 개인별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위젯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통합 IP 서비스를 한 눈에 보여주고 바로가기도 제공하며, 거래와 포트폴리오, 처리되지 않은 액션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위젯은 여러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는, 특별히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WIPO IP 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PCT 관련 두 가지 위젯은 로그인 시 강력한 인증을 요구하고, 내 ePCT 워크벤치에서 PCT 출원을, 해당 위젯 내에서 선택한 기준에 따라 필터링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요 PCT 기한(Key PCT time limits)" 위젯은 공개 예정인 국제출원이 어느 것인지, 또는 지정해 놓은 기간(주 단위) 내에 30개월의 기한에 도달하는 국제출원이 어느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바로가기를 제공합니다. "ePCT에서 처리 중인 항목(ePCT Pending Items)" 위젯에서는 내 ePCT 워크벤치의, 외부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국제출원을 포함한 초안

작성 후 제출 대기중인 국제출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PCT 관련 위젯도 점차적으로 추가될 계획입니다. 제안사항이 있는 이용자께서는 국제사무국(이메일: [pct.eservices@wipo.int](mailto:pct.eservices@wipo.int))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WIPO IP 포털 메인 메뉴에서는 접속 가능한 전체 WIPO 서비스 목록을 한 눈에 보여주어 접속이 빠르고 용이하며, 북마크 기능도 제공됩니다.
- 모든 WIPO 서비스에 대해 메시지 기능을 일원화하여, 여러 WIPO 서비스의 메시지를 한 곳에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메시지 기능에 WIPO IP 포털 메시지와 ePCT 알림(조회 시 강력한 인증 요구)이 포함되나 점차 다른 서비스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메시지 및 알림은 이메일로 계속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 시스템에서도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WIPO IP 포털 네비게이션 바에 있는 '바스켓(Basket)' 아이콘을 통해 WIPO 에 대한 수수료 납부가 간소화되고, IP 서비스 수수료 납부 알림도 생성됩니다. 헤이그 거래에 대해 관련 위젯 및 납부 알림을 통해 WIPO IP 포털에서 납부할 내역을 조회하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PCT 및 마드리드 거래는 아직 다른 납부 시스템을 사용 중이나, 추후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WIPO IP 포털은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pportal.wipo.int/>

WIPO IP 포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ortal/en/news/2019/article\\_0033.html](https://www.wipo.int/portal/en/news/2019/article_0033.html)

<https://c9iil7eltumjt1ddmdud-knuc.ssl.wipo.int/about>

## ePCT 업데이트

WIPO IP 포털 출시의 일환으로 ePCT(버전 4.6) 신규 버전이 나왔습니다(상기 "WIPO IP 포털 출시" 단락에서 새로운 WIPO IP 포털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 참조).

### 출원인을 위한 ePCT

ePCT 로그인 페이지가 WIPO IP 포털 로그인 페이지로 바뀌었는데, 이 곳에서도 ePCT 에서 항상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WIPO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WIPO IP 포털에 통합된, ePCT 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새로운 네비게이션 바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의 ePCT 북마크는 자동적으로 WIPO IP 포털 로그인 페이지로 재안내됩니다.

ePCT 신규 버전의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의 ePCT 출원과 관계됩니다. 국제출원이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서열목록은 "문서(Documents)" 부분(기존에 "검색(Search)" 부분이었던 것에서 변경)에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PCT 출원 시, 이제는 첨부된 서열목록 파일이 오직 국제조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해당 서열목록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출원 시의 출원의 일부가 됩니다. ePCT 로 출원 시 서열목록은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PDF 형식은 불허). 또한, PCT 규칙 69.1(a)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 국제예비심사 착수를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ePCT 액션 "제 II 장 청구서 제출(Submit Chapter II Demand)"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PCT 최신 버전의 모든 신규 기능에 대한 내용이 아래 출시노트 "출원인을 위한 ePCT의 신규사항(What's New in ePCT for applicant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68](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68)

###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국제기관을 위한 ePCT

출원인을 위한 ePCT와 마찬가지로, 관청을 위한 ePCT의 신규 버전이 개발되어 새로운 WIPO IP 포털 내비게이션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청들의 국제출원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ePCT의 관청용 기능들이 아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 출원 시의 국제출원 초안 미리보기
- 우선권 서류 전송이 아직 처리 중인 국제출원을 확인하기 위한 검색기능 개선
-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아직 송부되지 않은 경우, 이제는 우선권 서류를 준비되는 것부터 업로드하여 해당 기록원본과 동시에 국제사무국에 송부되도록 할 수 있음
- 서식 PCT/ISA/225(핵산염기 서열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 납부 요구서(Invitation to Furnish Nucleotide and/or Amino Acid Sequence Listing and to Pay, Where Applicable, Late Furnishing Fee))를 생성하기 위한 새로운 ePCT 액션

상기 신규 기능 및 기타 신규 기능에 대한 추가 내용과 관청을 위한 ePCT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 "관청을 위한 신규사항(What's New for Offices)"을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s\\_v4.6\\_Whats\\_New\\_20190916.pdf](http://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s_v4.6_Whats_New_20190916.pdf)

### PCT 정보 업데이트

#### CN 중국 (이메일 주소)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의 이메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 [pct\\_affairs@cnipa.gov.cn](mailto:pct_affairs@cnipa.gov.cn)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CN) 업데이트)

국제조사와 관련된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이집트 특허청, 유럽 특허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이스라엘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2019년 10월 10일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이 영어로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KRW로 납부되는 금액과 다른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수수료표 I(b)에 나온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CHF, SGD, USD

이집트 특허청 .....	EUR
유럽 특허청.....	JPY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JPY
이스라엘 특허청 .....	EUR
일본 특허청.....	EUR, SGD, USD
대한민국 특허청(한국어로 된 국제출원).....	CHF

상기 변동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U, EG, EP, IL, JP, KR 및 SG) 업데이트)

####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호주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스웨덴 특허등록청)

2019년 11월 1일부터, 각각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호주 특허청에 AUD 로 납부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KRW 로 납부되고 스웨덴 특허등록청에 SEK 로 납부되는 취급료의 증가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각각 AUD 302, KRW 250,000 및 SEK 1,980 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AU, KR, SE) 업데이트)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회의 자료 (PCT 총회)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기간동안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 51 차(제 22 차 정기) PCT 동맹 총회(PCT 총회)를 위해 준비된 자료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2258](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2258)

#### 세미나 자료

PCT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세미나 자료가, 마지막 버전이 나온 이후 새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과 몇몇 실제 발생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로 각각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zh/seminar/basic\\_1/document.pdf](http://www.wipo.int/pct/zh/seminar/basic_1/document.pdf) (중국어)

[www.wipo.int/pct/en/seminar/basic\\_1/document.pdf](http://www.wipo.int/pct/en/seminar/basic_1/document.pdf) (영어)

[www.wipo.int/pct/fr/seminar/basic\\_1/document.pdf](http://www.wipo.int/pct/fr/seminar/basic_1/document.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de/seminar/basic\\_1/document.pdf](http://www.wipo.int/pct/de/seminar/basic_1/document.pdf) (독일어)

[www.wipo.int/pct/ja/seminar/basic\\_1/document.pdf](http://www.wipo.int/pct/ja/seminar/basic_1/document.pdf) (일본어)

[www.wipo.int/pct/es/seminar/basic\\_1/document.pdf](http://www.wipo.int/pct/es/seminar/basic_1/document.pdf) (스페인어)

## PATENTSCOPE 검색시스템

### 새로운 PATENTSCOPE 인터페이스

WIPO IP 포털(상기 "WIPO IP 포털 출시" 단락 참조) 사용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자 2019년 9월 17일, 새로운 PATENTSCOPE 인터페이스가 새로운 WIPO IP 포털과 동시에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PATENTSCOPE 인터페이스는 아직 일부 기능이 이용 불가능한 상태라 아직 베타버전으로 작동 중입니다. 이용이 불가능한 기능들은 기존의 인터페이스로 이어지는 링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인터페이스 모두 앞으로 몇 달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 사용 시 이용자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사용 시와 같은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고(기존 버전에서의 검색결과와 신규 버전에서의 검색결과 동일), 검색기능과 분석기능도 그대로입니다. 이용자는 PATENTSCOPE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WIPO 계정으로 WIPO 포털 및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PATENTSCOPE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필요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화면 우상단 메뉴에 전용 "피드백(Feedback)" 버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 PATENTSCOPE 이용자 만족도 조사

PATENTSCOPE 검색시스템과 관련하여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WIPO는 얼마 전 PATENTSCOPE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3.wipo.int/opinio/s?s=16102](http://www3.wipo.int/opinio/s?s=16102)

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을 완료하기까지 5분이면 됩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럽 특허청: 새로운 수수료 반환 절차에 관한 추가정보

유럽 특허청에서는 개정된 수수료 반환 절차를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유럽 특허청에서 수수료를 반환 받기 위해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의 예금계좌 또는 은행 계좌 중 반환액을 입금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PCT 뉴스레터* 2019/03호 영문판 9페이지 참조).

유럽 특허청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PO, OJ EPO) 2019년 3월호에 게재된 2019년 2월 27일자 공지사항(OJ EPO 2019, A26, I(b)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3/2019-03.pdf>)에서는, 머지않아 전자적 형식(XML)으로 제출된 반환 요청만 접수될 것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반환 요청은 EPO 온라인 출원(EPO Online Filing) 또는 새로운 온라인 출원(CMS), ePCT, PCT-SAFE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거나, 유럽단계 진입을 위해 서식 1200e로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접수됩니다. 추가 내용은 유럽 특허청 관보에 9월 말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로 전자적으로 제출된 반환 요청의 기록이 없거나, 또는 해당 요청이 불명확한 경우, 유럽 특허청은 출원인들이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https://epo.org/fee-payment-service/en/refund>)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반환 절차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sup>1</sup>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information-epo/archive/20190911.html](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information-epo/archive/20190911.html)

##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 신규 납부 요청서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 않았으며 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PCT 출원인 및 대리인 대상 수수료 납부 요청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그간 PCT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공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IPS –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에서도 납부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새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서의 예시 및 PCT 사용자가 WIPO에 제출한 여러 다른 요청서의 예시와 추가 전반적인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https://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한국어)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하게 모든 PCT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CT 제 21 조 제 2 항(a) 참조). 이러한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PCT 제 29 조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자의 조직 내 수수료 납부 처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납부 요청을 함께 받았을 발명자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요청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41-22) 338 83 38

팩스: (+41-22) 338 83 39

이메일: [pct.legal@wipo.int](mailto: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 또는 발명자(PCT 사용자)께서 자국 정부나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상기 사이트에는 민원제기 시 사용할 제안 문구와,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당국 및 소비자 보호 단체의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 유용한 도움말

###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Q:** 최근 스위스 국민이자 거주민인 출원인을 대신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PCT 규칙 92 의 2 에 따라 해당 출원에 제 2 출원인을 추가할 것을 방금 요청했습니다. 이 공동출원인은 스위스 거주민이나 러시아 국적 보유자입니다. 출원 시에는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할 국제조사기관은 유럽 특허청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출원인이 러시아 국민이므로, 유럽 특허청에서 아직 국제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에 국제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sup>1</sup> 해당 내용은 유럽 특허청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PO)의 관련 내용으로 대체될 예정.

A: 국제출원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제출된 경우, 관할 국제조사기관(ISA)(또는 경우에 따라 국제조사기관들)은, PCT 규칙 35.3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이 해당 출원인이 거주민이거나 국민인 체약국의 또는 체약국을 위해 대행하는 국내관청에 제출된 경우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되었을 곳(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질문자의 경우, 국제출원 출원 시의 출원인이 스위스 국민이자 거주민인 단독 출원인이었기에, 해당 출원에 대한 관할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RO/IB) 외에도 스위스연방 지식재산기관이나 유럽 특허청이 되고, 따라서 관할 국제조사기관은 유럽 특허청이 됩니다(관할 국제조사기관에 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내 수리관청 관련 부분 참조).

보통 국제사무국(RO/IB)에 국제출원을 하는 하나의 이점은, 출원인의 거주국이 국적과 상이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기 다른 국가의 거주민 및/또는 국민인 경우, PCT 규칙 35.3 및 59.1(b)에 따라, 수리관청으로서의 관할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에 출원 시보다 선택할 수 있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출원인 두 명 모두가 출원 시 국제출원에 포함되었다면, 출원인들의 스위스 및 러시아 국적에 따라 유럽 특허청이나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원이 제출된 후에 러시아 출원인이 추가되었으므로, 추후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에 국제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조사가 착수 전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국제조사기관 결정 시 고려되는 것은 *국제출원 출원 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무국(RO/IB)에 국제출원이 제출된 경우,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IPEA)(들)도, PCT 규칙 59.1(b)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이 해당 출원인이 거주민이거나 국민인 체약국의 또는 체약국을 위한 국내관청에 제출된 경우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되었을 곳(들)입니다.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면, 아마 해당 청구서 제출 전에 두 번째 출원인이 출원에 추가되었다 해도, 유일한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유럽 특허청이 됩니다.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결정 시 고려되는 것은 *국제출원 출원 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를 원하시면(예를 들어, 러시아어 문헌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기를 원하시면), PCT 규칙 45의 2.1에 따라,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에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보충적 국제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적 국제조사는 유럽 특허청의 주(主) 국제조사에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보충적 국제조사기관)은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발행하지만<sup>2</sup> 견해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제출된 관청과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22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언제든지 (처음 국제조사를 수행한 관청 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청<sup>3</sup> 어느 곳이나 보충적 국제조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은 서식 PCT/IB/375([www.wipo.int/pct/en/forms/index.html](http://www.wipo.int/pct/en/forms/index.html))를 통해 해야 하고, "문서 업로드 액션(Upload Documents Action)"을 통해 ePCT에서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 소개, 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 <sup>2</sup>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PCT 제 17 조제 2 항(a)에 규정된 선언을 한 경우, 또는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이 PCT 제 16 조제 3 항(b)에 따른 적용 가능한 협정에 언급된 제한 또는 조건에 의하여 보충적 국제조사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은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음(PCT 규칙 45의 2.5(e)).
- <sup>3</sup> 호주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등록청, 스웨덴 특허등록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터키 특허상표청,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지식재산국, 북유럽 특허기구, 비세그라드 특허청에서도 보충적 국제조사 수행.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루마니아: 루마니아 국가발명상표청, ePCT 를 통해 출원된 국제출원의 수리 시작 예정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국호 변경

###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CY 키프로스 (위치 및 우편주소)

EC 에콰도르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이메일/인터넷 주소)

GB 영국 (수수료)

KE 케냐 (위치, 우편주소)

NI 니카라과 (전자출원)

NO 노르웨이 (수수료)

RO 루마니아 (전자출원)

SE 스웨덴 (수수료)

핀란드 특허등록청(PRH): "PCT 다이렉트" 시범사업 확대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19년 10월 | 2019/10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새로운 PCT 체약국

### 사모아 (국가코드: WS)

2019년 10월 2일, 사모아는 PCT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53번째 PCT 체약국이 되었고, 2020년 1월 2일부터 PCT의 규정에 구속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되는 모든 국제출원에는 자동적으로 사모아가 함께 지정됩니다. 또한, 사모아가 PCT 제 2장의 규정에 구속되므로, 2020년 1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사모아가 자동적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나아가 2020년 1월 2일부터 사모아의 국민과 거주민은 PCT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사모아는, PCT 제 64조 제 5항에 따라, 자국이 PCT 제 59조의 규정(PCT나 PCT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이상의 PCT 체약국 사이의 분쟁 관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PCT 동맹총회

제 51차 PCT 동맹총회(PCT 총회)가 WIPO 회원국 총회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회의 요약내용에 나온 자료들을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T 총회 자료: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a/51](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a/51)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2](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2)

이번 PCT 총회에서는, 문서 PCT/A/51/2의 부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PCT 규칙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PCT 규칙 82의 4: 불시의 정전이나 예정된 정비와 같은 이유로 관청에서 허용된 전자적 통신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면제에 대한 PCT 내 법적 근거를 관청에 제공.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2/17을 참조하십시오.
- PCT 규칙 26의 4: 국제단계에서 PCT 규칙 4.11에 규정된 출원서의 표시사항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대한 PCT 내 법적 근거 제공. 출원이 지정국에서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위한 출원으로, 또는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표시를 보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음.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2/8을 참조하십시오.

PCT 규칙 4, 12, 20, 40의 2, 48, 51의 2, 55 및 82의 3: 국제출원에서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의 경우,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을 올바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 허용, 또는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한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의 추가 허용. 새로운 PCT 규칙 20.5의 2 "잘못 제출된 요소 및 부분(Erroneously Filed Elements and Parts)"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들을 다룹니다.

- 모든 출원일 요건이 충족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올바른 요소 및 부분 제출(새로운 PCT 규칙 20.5의 2(b))
- 모든 출원 요건이 충족된 날이 지난 뒤에 올바른 요소 및 부분 제출(새로운 PCT 규칙 20.5의 2(c))
- 선출원에 포함된 바와 같은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의 유효한 인용에 의한 보완(새로운 PCT 규칙 20.5의 2(d))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2/9와, 문서 PCT/WG/12/24 내 단락 100 내지 110을 참조하십시오.

- PCT 규칙 15, 16, 57 및 96: 한 관청에서 다른 관청을 위해 접수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는 데 대한 PCT 내 법적 근거 제공.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2/20을 참조하십시오.
- PCT 규칙 71 및 94: 국제예비심사기관에게 동 기관의 파일에 있는 특정 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 도입. 상기 사본은 국제사무국이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함.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2/12를 참조하십시오.

본 개정안은 2020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국제출원의 잘못 제출된 요소 및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건의 양해서를 채택했습니다.

- PCT 규칙 20.8(a-의 2)를 채택하는 데 있어, 총회에서는, 수리관청이 본 규칙에 따라 상충사실을 통지했기 때문에 동 관청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리관청과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의 허락 하에, PCT 규칙 19.4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함에 동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 이 경우, PCT 규칙 19.4(b)에 따라, 해당



출원은 해당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 국제사무국을 대신하여 해당 수리관청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

- PCT 규칙 20.5의 2를 채택하는 데 있어, 총회에서는, PCT 규칙 20.5의 2(d)에 따라 인용에 의해 올바른 요소나 부분이 보완된 경우, 해당 국제조사기관이 해당 출원에 남아있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 또한, 출원인이 PCT 규칙 40의 2에 따른 요구서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에야, 국제조사기관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이 국제출원에 추가되었다거나 인용에 의해 보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의 목적으로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이번 총회에서는 국민 또는 거주민이 PCT 수수료 감면 자격을 갖는 국가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항목 5에 나온 기준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현재 기준을 유지하고 해당 수수료표에서 요구하는 대로 5년 뒤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문서 PCT/A/51/3 참조).

총회에서는 또한,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6호에 소개된 바와 같이 PCT 실무그룹에서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보고서(문서 PCT/A/51/1)를 검토했습니다.

## 특정 PCT 개정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 CA 캐나다 (PCT 규칙 49의 3.1(g))

지정(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국제출원일이 2019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후인 국제출원들에 대하여, PCT 규칙 49의 3.1(g)에 따른 상충사실의 통지(PCT 뉴스레터 2006/05호 페이지 3 참조)를 철회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26의 2.3에 따른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와 관련한 PCT 규칙 49의 3.1(a) 내지 (d)가, 상기 국제출원들과 관련하여 지정(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목록이 변경됩니다.

[https://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s://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한국어)

## PCT 정보 업데이트

### 조사료 (유럽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 북유럽 특허기구, 스웨덴 특허등록청, 미국 특허상표청)

대한민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또는 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출원인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베트남 중 한 곳의 국민이고 그 곳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가진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당 관청에 납부되는 조사료가 2019년 10월 10일부로 75% 감면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유럽 특허청 .....	NOK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 .....	CHF, EUR
북유럽 특허기구 .....	NOK
스웨덴 특허등록청 .....	NOK
미국 특허상표청: .....	ZAR

상기 변동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BR, EP, KR, NO, SE 및 US) 업데이트)

### 2019 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

2019 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영문)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64](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64)

본 문서는 전 세계의 지식재산(IP) 활동을 분석하는 권위 있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 및 지역 IP 관청들과 WIPO로부터 집계한 2018 년도 출원, 등록 및 갱신에 관한 통계를 토대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미생물, 품종보호 및 지리적 표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의 보고서는 또한 설문조사 및 산업 자료를 반영하여 출판업계 현황을 조명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 세계 160 개 IP 관청들의 자료가 반영된 약 180 개 지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19/838 에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9/article\\_0012.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9/article_0012.html)

### 유용한 도움말

#### PCT 규칙 4.17 에 따른 선언 ePCT 로 제출하기 및 발명자 선언을 위해 발명자의 서명 취득하기

**Q:** 제가 곧 제출할 국제출원에 발명자 다섯 명이 포함될 예정인데, 미국에서의 국내단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제단계 동안 발명자 모두에 대해 발명자 선언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관할 PCT 수리관청에서 ePCT 출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을 ePCT 로 제출하고 싶은데, 선언 제출용 ePCT "액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액션을 사용하면 발명자들의 서명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말씀하셨듯, ePCT 에 "규칙 4.17 에 따른 선언(Declarations under Rule 4.17)"이라는 액션이 있어, (질문자에게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eOwner 또는 eEditor 접근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액션을 통해 PCT 규칙 4.17 에 따른 선언을 작성하고 출원 후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ePCT 를 이용하실 때 출원 시에 국제출원과 함께 선언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때 유의하실 점은, 출원서 서식(RO/101)에 선언을 포함하는 용지가 들어있어 질문자의 출원이 이미 용지 30 매 이상인 경우 추가 페이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지 수수료 외에는, ePCT 로 선언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출원 시든지, 출원 후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효율적입니다. 해당 선언을 위한 표준화된 문구가 항상 정확한 언어로 자동

생성되고(즉, 선언의 부정확한 표현을 이유로 보정 요구를 받을 일이 없음), ePCT 에 있는 관련 서지정보(발명자 선언의 경우 발명자들의 이름 및 주소 등)가 자동으로 선언에 포함되어 재입력(오타 발생 가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원 시에는 ePCT 외 다른 방식으로 기작성된 선언을 첨부할 것을 선택하고 PDF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지만, 상기 자동 기능과 또한 이용 가능한 확인 기능의 이점을 누리도록 선언을 ePCT 로 실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PCT 규칙 4.17(iv)에 따른 발명자 선언의 서명에 관해서는(PCT 규칙 4.17 선언들 중 유일하게 서명이 필요하며, ePCT 에서는 제출 전에 서명이 되었는지 확인), ePCT 의 "외부서명(external signature)" 기능을 통해 발명자들의 서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발명자는, ePCT 에 접속할 필요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ePCT 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선언 초안을 검토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들의 이름이 나온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각 발명자의 이름을 선택하고 "외부서명"을 선택하기만 하면 서지정보에 해당 발명자의 것으로 나온 이메일 주소로 서명 요청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단, ePCT 에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필요시 추가할 수 있고, 또는 기존 이메일 주소를 편집하여 다른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도록, 외부서명 요청이 예를 들어 해당 발명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도록 할 수 있음).

이메일로 전송된 외부서명 요청에는 고유 문서 ID 코드와 수신인이 텍스트 문자열 서명을 입력할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서명이 필요한 실제 문서는 ePCT 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발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별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공유 드라이브나 특허관리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위해 ePCT 에서 다운로드한 문서 초안에는 동일한 고유 문서 ID 코드가 표시되어 해당 외부 서명인이 이메일로 수신한 서명 요청과 서명이 필요한 문서를 정확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명자는 발명자 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선언과 관계된 출원의 내용(청구범위 포함)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선언에 서명하면, 질문자는 해당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 받고, 서명된 문서를 미리보기 한 뒤 액션으로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당 국제출원의 "문서(Documents)" 섹션으로 돌아가 국제사무국의 처리를 위해 대기중인 제출된 선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PCT 온라인 서비스 도움말(PCT eServices Help) 페이지에 외부서명 기능에 관한 일반적인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992](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992)

PCT-SAFE 를 통해 PCT 규칙 4.17 에 따른 선언을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지난 PCT 뉴스레터 2014/03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edocs/pctndocs/en/2014/pct\\_news\\_2014\\_03.pdf](http://www.wipo.int/edocs/pctndocs/en/2014/pct_news_2014_03.pdf)

PCT 규칙 4.17 에 따른 선언의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5.074 내지 5.083A 및 6.045 내지 6.050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영어)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AZ** 아제르바이잔 (필요한 사본 부수, 수수료)

**BG** 불가리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수료)

**BY** 벨라루스 (수수료)

**CH** 스위스 (통신수단)

**HU** 헝가리 (수수료)

**IN** 인도 (수수료)

**KE** 케냐 (전화번호, 통신수단)

**MX** 멕시코 (전화번호)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수료)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중국어로 제공되는 PCT 자료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19년 11월 | 2019/11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국제사무국, 특정 팩스 서비스 유지 예정

지난 2018년 1월, 국제사무국은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전과 다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했습니다(PCT 뉴스레터 2017/12호 참조). 2018년 9월 국제사무국은 회원국들 및 사용자 그룹들과 국제사무국의 PCT 팩스 서비스 제공 중단 제안을 협의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PCT 팩스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것이라고 2019년 5월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로 많은 PCT 사용자들과 사용자 대표, 사용자 대표 단체에서 국제사무국의 PCT 팩스 서비스 종료로 인해 나타날 결과에 대해, 특히,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존 온라인 시스템으로 PCT 문서를 전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기존에 발표했던 2019년 12월 말일부 팩스 서비스 종료를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과 관청이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여 비상시에만 팩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팩스 서비스만 유지할 예정입니다.

-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인(및 PCT 관청과 기관)이 ePCT(<https://pct.wipo.int>)를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ePCT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sup>1</sup>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를 사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국제사무국에 문서를 전송하는 데 팩스를 사용하면 송신인에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팩스를 통한 전송이 기술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몇 차례 안내된 바 있고, 또한 PCT 규칙 92.4(c)에서는 팩스를 통해 송부된 서류에 대해 "도달된 서류 중 판독할 수 없는 부분 또는 송부한 서류 중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팩스 전송이 불가결한 경우에는 PCT 웹사이트에 나온 번호들로 국제사무국 앞으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연락처" 참조: <https://www.wipo.int/pct/ko/index.html>).

<sup>1</sup> 추가 정보는 이곳을 참조: [www.wipo.int/pct/ko/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http://www.wipo.int/pct/ko/faqs/contingency_upload_faq.html)

국제사무국에서는 팩스 수령 확인증을 따로 보내 드리지는 않으나, 수신한 팩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국제사무국(IB) 및/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국제사무국(IB)의 정규 업무시간(9:00-18:00, 중앙유럽 표준시(CET))이면, 가급적 팩스를 보내기 전에 먼저 해당 PCT 서식에 나온 "담당 직원(authorized officer)"에게 전화를 걸어 팩스를 전송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확인: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TeamLookup.xhtml>). 업무시간이 아니면,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 담당 직원이 다음 업무일에 팩스 수신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국제사무국(IB) 및/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불가피하게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국제출원이거나, 국제출원의 보정(corrections or amendments)을 포함한 대체용지인 경우에는, 팩스 송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PCT 정보 서비스(PCT Information Service)로는 팩스 전송이 불가능해질 예정입니다. PCT 관련 일반적인 문의나 질문은 이메일을 보내시거나([pct.infoline@wipo.int](mailto:pct.infoline@wipo.int))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41-22) 338 83 38).

출원인이 이메일 알림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국제출원의 경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수리관청 서식들은 팩스로 송부하는 것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은 더 이상 이러한 서식들을 팩스로 송부하지 않고 우편으로만 송부할 예정입니다. 출원인이 ePCT에서 본인의 국제출원을 조회할 수 있으면 국제사무국(IB)이 발행한 서식을 포함한 모든 서식을 발행된 즉시 ePCT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PCT 사용자 커뮤니티에 건설적인 대화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9년 WIPO PCT 사용자 설문조사

PCT의 모든 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WIPO에서는 2년마다 시행되는 사용자 커뮤니티 대상 설문조사를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PCT 사용자들이 주신 의견은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PCT 서비스 분야 중 개선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료까지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하시려면 "Participation in the 2019 PCT User Survey"란 제목으로 아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십시오.

[survey@wipo.int](mailto:survey@wipo.int)

그러면 설문조사가 시작되는 대로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전자출원된 출원을 위한 출원서 서식

전자출원(예: ePCT 나 PCT-SAFE)을 위한 출원서 서식에, 체크리스트 항목 IX-6a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국제조사 목적으로도 사용)"이 모든 출원을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제출원에 서열목록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자적 파일 첨부(Electronic file(s) attached)" 열에 대시 '-'가 나타납니다. 서열목록이 있으면, 해당 컬럼에 체크표시 '✓'가 나타납니다.

## PCT-SAFE 업데이트

###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9 년 10 월 1 일, 버전 3.51.089.265)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국제사무국 휴무일 및 올해 연말 국제공개 일정

2019 년 12 월부터 2020 년 1 월까지 국제사무국의 주말 외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년 12 월 25 일 수요일  
2019 년 12 월 31 일 화요일  
2020 년 1 월 1 일 수요일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연말 연휴기간에 아래의 날짜에 업무를 합니다.

2019 년 12 월 26 일 목요일  
2019 년 12 월 27 일 금요일  
2019 년 12 월 30 일 월요일

이후 2020 년 1 월 2 일 목요일에 평소대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PCT 정보 서비스(PCT Information Service)와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PCT eServices Help Desk), PCT 운영 서비스(PCT Operations Service)의 운영 일자와 국제공개 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 정보 서비스

PCT 정보 서비스는 2019 년 12 월 25 일 수요일부터 2020 년 1 월 1 일 수요일까지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0 년 1 월 2 일 목요일 9:00 시(CET)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단, 연휴기간 동안 PCT 정보 서비스에 전화를 걸면(전화번호: (+41-22) 338 83 38) 녹음된 안내음성을 통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PCT 정보 서비스에서는 국제출원의 출원과 이후 PCT 국제단계에서 진행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를 처리합니다(특정 출원과 관련된 문의는 "PCT 운영 서비스(PCT Operations Service)"에서 담당).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infoline.html](http://www.wipo.int/pct/en/infoline.html)



##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 및 PCT 운영 서비스

연말 연휴기간 동안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와 PCT 운영 서비스의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휴무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2020년 1월 1일 수요일:	휴무
2020년 1월 2일 목요일 및 이후: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추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는 전자적으로 출원을 작성 및 제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즉 ePCT(<https://pct.wipo.int>), PCT-SAFE([www.wipo.int/pct-safe/en/index.html](http://www.wipo.int/pct-safe/en/index.html)) 및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www.wipo.int/das/en/](http://www.wipo.int/das/en/))와 관련된 문의에 응답합니다.
- PCT 운영 서비스는 특정 출원과 관련된 문의에 응답합니다. PCT 운영 서비스는 10개 팀에서 담당합니다. 관할 팀의 대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으시려면 서식 PCT/IB/301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TeamLookup.xhtml>

## 국제공개 일정

다가오는 연휴기간 동안에는 PCT 국제출원 공개 일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출원들은 평소대로 매주 목요일(즉,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과 2020년 1월 2일 목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취급료 (다수 관청)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출원료 및 30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번 항목에 열거된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취급료의 일부 통화의 증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바대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들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http://www.wipo.int/pct/guide/en/))의 아래 부속서들에 반영됩니다.

- 부속서 C(수리관청): AM, AP, AT, AU, AZ, BA, BH, BW, BY, BZ, CA, CL, CR, CU, CY, CZ, DE, DJ, DK, DO, EA, EC, EE, EG, EP, ES, FI, FR, GB, GE, GH, GR, GT, HN, HU, IB, IE, IL, IN, IS, IT, JO, JP, KE, KG, KH, KZ, LR, LT, LU, LV, MD, ME, MT, MW, MX, NI, NL, NO, NZ, OM, PA, PE, PG, PH, PT, QA, RO, RS, RU, SA, SC, SE, SG, SI, SK, SM, SV, SY, TJ, TM, TT, UA, US, UZ, ZA, ZM, ZW
- 부속서 D(국제조사기관): 전체
- 부속서 SISA(국제조사기관(보충적 조사)): 전체
- 부속서 E(국제예비심사기관): AT, AU, CA, CL, EG, EP, ES, FI, IL, IN, JP, KR, PH, RU, SE, SG, UA, US, XN, XV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0년 1월 1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EUR 및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송달료: .....	EUR 92	USD 101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sup>2</sup> .....	EUR 46	USD 50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IB) 업데이트)

### JP 일본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분류체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특허청은, 출원인과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제 문헌의 사본을 요청하려면 아래 일본 특허청 웹사이트에 있는 관련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www.jpo.go.jp/system/patent/pct/tetuzuki/document/tokkyo\\_jyouyaku-jitumu/22.pdf#page=62](http://www.jpo.go.jp/system/patent/pct/tetuzuki/document/tokkyo_jyouyaku-jitumu/22.pdf#page=62)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및 E(JP) 업데이트)

나아가, 일본 특허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 외에 추가적으로 파일 인덱스(FI) 분류체계를 표기할 것이라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과 WIPO 국제사무국 간 협정(the Agreement between the Japan Patent Office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부속서 E 도 아래에 업데이트 됩니다.

[www.wipo.int/pct/en/texts/agreements/ag\\_jp.pdf](http://www.wipo.int/pct/en/texts/agreements/ag_jp.pdf)

<sup>2</sup> PCT 규칙 17.1(b)에 따라 우선권서류가 국제출원을 위해 작성된 경우와, 해당 관청이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에서 우선권서류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출원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한국어)

아래에서 출원서 서식(PCT/RO/101)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PCT/IPEA/401)의 2019 년 7 월 버전을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에 이어)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forms/](http://www.wipo.int/pct/en/forms/)

### 2019 년 세계지식재산 보고서

WIPO 의 2019 년판 세계지식재산 보고서 "혁신의 지형도: 로컬 핫스팟,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혁신의 지형도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봅니다. 50 년 동안의 수백만 개의 특허 및 과학 출판물을 분석한 2019 년 세계지식재산 보고서는 혁신 핫스팟들의 탄생과 그들 간 국경을 뛰어넘은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추가 내용은 기사 PR/2019/839 를 확인하십시오([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9/article\\_0013.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9/article_0013.html)). 해당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67](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67)

### 유용한 도움말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통해 우선권서류 제출하기 - 1 부: 선출원을 하는 관청에 DAS 시스템에서 우선권 서류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Q:** 국내 특허청에 국내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DAS 를 사용해서 그 출원이 미래 국제출원의 우선권서류로 이용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국내 특허청에 해당 서류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DAS 는 DAS 에 참여하는 모든 타 관청들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확실한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약과 법률뿐 아니라 PCT 규칙 17.1 에 의거하여 PCT 에 따른 우선권서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DAS 는 선출원이 이루어진 관청과 다른 관청에 PCT 출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PCT 규칙 17.1(b)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선출원된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국제출원에서 주장하려고 하는데 DA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면(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추가내용은 아래 참조), 해당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이 DAS 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국제사무국에 DAS 에서 해당 선출원의 사본을 입수하도록 간단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17.1(b) 의 2)).

DAS 에서 선출원을 우선권서류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선출원을 하는 관청(제 1 청(Office of First Filing, OFF))이 DAS 의 "**기탁관청(depositing Office)**"이어야 합니다.

다음 국가들의 관청이 현재 국내 또는 지역출원과, PCT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에 대한 기탁관청입니다: 호주, 브라질, 칠레, 중국, 덴마크, 핀란드,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모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또한 다음의 지역관청들도

기탁관청입니다: 유라시아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PCT 출원에 대한 기탁관청입니다.

다음 국가들의 관청은 현재 국내출원에 대해서만 기탁관청입니다: 에스토니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영국, 미국.

다른 관청들도 DAS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각자 여러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DAS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무국이 DAS에서 우선권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원인은 두 가지 주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 제 1 청에 선출원의 사본을 DAS에 기탁하도록 요청
2. 이후 국제출원을 제출할 때, 국제사무국에 DAS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제 1 청에 선출원의 사본을 DAS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음 호 PCT 뉴스레터의 유용한 도움말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부 DAS 기탁관청은 동 관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은 모두 DAS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는 반면에, 다른 기탁관청은 제한된 범위의 출원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출원에 대해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참여관청의 해당 서비스 범위는 아래 WIPO의 DAS 웹사이트 내 각 관청별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

제 1 청에 선출원의 사본을 DAS 전자도서관에 기탁하도록 요청하는 정확한 방법도 해당 제 1 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이한데, 출원인에게 별도 서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관청도 있습니다. 많은 관청이 각자의 특별 요건을 각자의 웹사이트에 안내하고 있고, 각 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은 위에 나온 WIPO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청에서 국제사무국에 동 관청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링크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내 관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경우 DAS 기탁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 관청에 제출된 출원들이 시스템적으로 DAS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출원에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참여관청들이 해당 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출원 데이터 시트(Application Data Sheet, ADS) 서식(PTO/AIA/14)에는 출원시의 출원의 사본을 참여관청들이 이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출원인이 이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1 청에 우선권서류를 DAS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그러한 요청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하면, 제 1 청은 우선권서류의 전자사본을 준비하여 DAS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이나 제 1 청에서 출원인에게 접근코드(access code)를 보내줍니다. 아니면, 출원 과정의 일부로 출원인에게 부여된 코드가 접근코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의 예들을 참고하십시오.

- 선출원이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 출원인이 Online Filing(EOLF) 또는 새로운 온라인 출원(CMS)을 통해 출원하면, 유럽 특허청은 DAS 접근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유럽특허 허여 요청서나 국제출원의 경우 PCT 출원서 서식에 대해 발행된 접수확인증에

추가합니다. 아니면, DAS 접근코드는 자동으로 별도로 통지됩니다(추가 내용 참조: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3/a27.html](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3/a27.html)).

- 선출원이 JPO PAS 를 통해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 우선권서류가 자동으로 DAS 에 등록되고 접근코드가 온라인 출원 접수증에 표시됩니다.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에 DAS 접근코드를 발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추가 내용 참조: [www.jpo.go.jp/e/system/patent/shutugan/yusen-epdx/e\\_das\\_first.html](http://www.jpo.go.jp/e/system/patent/shutugan/yusen-epdx/e_das_first.html)).
- 선출원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된 경우, 출원 접수증 원본과 전자접수확인증에 표시된 확인번호를 접근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내용 참조: [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international-protection/electronic-priority-document-exchange-pdx](http://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international-protection/electronic-priority-document-exchange-pdx)).

접근코드를 사용하여,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을 제출하는 제 2 청(Office of Second Filing)에 우선권서류 사본을 입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된 PCT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출원의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한 관청이 DAS 시스템에서 국제출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전제 하에, DAS 루트를 통해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제사무국이 이미 선출원된 PCT 출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우선권서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려면 해당 출원을 송부해줄 것을 국내출원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이 제 1 청이고 출원이 ePCT 를 통해 작성되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권서류 이용서비스(DAS)에 이 국제출원을 제공할 것을 수리관청에 요청합니다(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mak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available to the Priority Document Access Service (DAS))"라고 표기된 박스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에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 ePCT 에서 "DAS 에 국제출원 제공(Make international application available to DAS)"이라고 표기된 액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출원을 DAS 에 등록하도록 서신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서신은 ePCT 를 통해 업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선출원이 등록되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은 출원인에게 서식 PCT/RO/132 로 고유 접근코드를 송부합니다.

PCT 에서 DAS 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das/en/pdf/pct\\_and\\_das.pdf](http://www.wipo.int/das/en/pdf/pct_and_das.pdf)

다음의 상황에서는 DAS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 1 청이 DAS 참여관청이 아닌 경우, 또는
- 제 1 청에서 해당 출원이 DAS 에서 제외되도록 제한하는 경우(예: 제 1 청에서 전자출원을 요구하나 출원인이 전자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선출원(국내출원으로서든, 국제출원으로서든)이 제출된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관청에 선출원의 사본을 PCT 규칙 17.1(b)에 따른 "재래식" 방법으로 준비하여 송부하도록 간단히 요청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DAS 를 통한 우선권서류 제공에 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9/12 호에서 다루겠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베트남 및 몰도바 공화국, 튀니지: 베트남 지식재산청 및 몰도바 공화국 국가지식재산기관, 튀니지 국가표준및산업재산기관에서 국제출원을 전자적 형태로 수리 및 처리할 예정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캐나다 지식재산청

### PCT 정보 업데이트

B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위치, 우편주소)

CA 캐나다 (임시보호, 국내단계 진입 기한, 수수료)

CH 스위스 (통신수단)

CR 코스타리카 (이메일 주소)

DO 도미니카공화국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관련 특별 규정)

EA 유라시아 특허청 (국제공개 후 임시보호, 수수료)

KG 키르기스스탄 (인터넷 주소)

MD 몰도바 공화국 (전자출원)

MG 마다가스카르 (전화번호, 통신수단,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NI 니카라과 (이메일 주소, 출원언어)

PT 포르투갈 (인터넷 주소, 수수료)



**RO** 루마니아 (전자출원)

**TH** 타이 (위치 및 우편주소, 통신수단,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때, 사본 수)

**TN** 튀니지 (전자출원)

**TR** 터키 (위치 및 우편주소)

**TT** 트리니다드토바고 (전화/팩스 번호)

**VN** 베트남 (전자출원)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유럽 변리사 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을 위한 자료

유럽 특허청 - 조사 및 심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19년 12월 | 2019/12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국제사무국의 제한적 팩스 서비스에 관한 재공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사무국에서는 출원인들과 관청들이 비상시에만 팩스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제한적인 팩스 서비스만 유지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문서 전송에 이용 가능한 대안, 특히 ePCT(<https://pct.wipo.int>)에 관한 추가 사항은, PCT 뉴스레터 2019/11호와, [www.wipo.int/pct/ko/infoline.html](http://www.wipo.int/pct/ko/infoline.html)(한국어)에서 마지막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SAFE 업데이트

###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20년 1월 1일자, 버전 3.51.090.266)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PCT 정보 업데이트

### KH 캄보디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2020년 1월 1일부로 캄보디아 산업재산부(DIPC)는, 캄보디아 국민 및 거주민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캄보디아 산업재산부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CNIPA) 및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이어, 대한민국 특허청(KIPO)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조사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은 아래 "조사료"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KH) 업데이트)

### 조사료 (대한민국 특허청)

캄보디아 산업재산부에서 2020 년 1 월 1 일부로 대한민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상기 "KH 캄보디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단락 참조), 대한민국 특허청은, 출원인(출원인이 복수이면 각 출원인)이 캄보디아 국민이고 캄보디아 소재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조사료가 상기 일자부터 75% 감면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KR) 업데이트)

### 국제사무국 휴무일

PCT 규칙 80.5 에 따른 기간의 계산상,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국제사무국의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020 년 1 월 1 일

2020 년 4 월 10 일

2020 년 4 월 13 일

2020 년 6 월 1 일

2020 년 12 월 25 일

2020 년 12 월 31 일

상기된 일자들은 국제사무국에만 해당되며 국내 또는 지역관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청들의 2020 년 휴무일은 아래 PCT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http://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2019 년 7 월 1 일 발효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영문판을 이제 PDF 형식 외에 HTML 형식으로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ispe/index.html](http://www.wipo.int/pct/en/texts/ispe/index.html)

#### PCT 출원인 가이드 일본어판

업데이트 된 2019 년 4 월자 PCT 출원인 가이드 일본어판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ja/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ja/guide/index.html)

## PCT 및 파리협약(the Paris Convention) 당사국 및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PCT 웹사이트에 나온 표들과의 통일성을 위해, 상기 제목의 표가 HTML 형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표의 새로운 링크(영어 및 중국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wipo.int/pct/en/paris\\_wto\\_pct.html](http://www.wipo.int/pct/en/paris_wto_pct.html) (영어)

[www.wipo.int/pct/zh/paris\\_wto\\_pct.html](http://www.wipo.int/pct/zh/paris_wto_pct.html) (중국어)

## 2019 년 PCT - 연말 업데이트

지난 2019 년 12 월 10 일 제공된 웨비나 "2019 년 PCT - 연말 업데이트"(영어)에서는 최근, 그리고 앞으로의 PCT 변경사항과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웨비나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와 녹화 영상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2020 년에도 다양한 PCT 주제를 다루는 웨비나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웨비나 소식은 PCT 뉴스레터와 위의 링크에 나온 페이지에 공지됩니다.

한국어 웨비나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 유용한 도움말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통해 우선권서류 제출하기 - 2 부: 국제사무국에 DAS 시스템에 있는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기

**Q:** 제가 국내 특허청에 국내특허출원을 하고, 해당 특허청에 해당 출원을 향후 국제출원의 우선권서류로 DAS 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해당 선국내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제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PCT 규칙 17.1 에 따른 우선권서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제사무국에 DAS 시스템에서 해당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청 방법과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DAS 는 DAS 에 참여하는 모든 타 관청들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확실한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약과 법률뿐 아니라 PCT 규칙 17.1 에 의거하여 PCT 에 따른 우선권서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 1 부에서는(PCT 뉴스레터 2019/11 호에 게재), 나중에 이루어지는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선국내출원을 DAS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히, 제 1 청(Office of First Filing, OFF)이 DAS 기탁관청이 아니거나, 선출원이 해당 DAS 기탁관청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해당 DAS 기탁관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 1 청에 선출원을 DAS 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접근코드(access code)가 제공되는데, 국제사무국(또는 제 2 청(Office of Second Filing, OSF))에 해당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 접근코드가 필요합니다. 접근코드는 국제사무국이나 제 1 청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특정 관청의 경우 출원 프로세스의 일부로 접근코드가 출원인에게 자동 제공되기도 함).<sup>1</sup> 국제사무국에서 발급한 접근코드는 "Noreply@wipo.int"에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sup>2</sup> DAS에 등록된 선출원의 접근코드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복수의 국제출원에서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재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우선권서류에 대해 새로운 접근코드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PCT 규칙 17.1에 따른 우선권 요건을 충족하도록 DAS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하는 방법은, 국제출원을 하는 시점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출원 후에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여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원 시(바람직한 방법):

- ePCT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주장(Priority Claims)" 화면 중 "국제사무국에 우선권 서류 제출 방법(Option(s) for providing the priority document to the IB)"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 즉, "국제사무국이 전자도서관(DAS)으로부터 입수(International Bureau to obtain from a digital library (DAS))"를 선택하고 DAS 접근코드를 입력(우선권 주장 건이 복수인 경우 각 우선권서류에 대해 실시). 그러면 ePCT에서 DAS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우선권서류를 검색하고, 입력된 우선권주장 데이터와 대조하여 접근코드를 인증.<sup>3</sup>
- PCT-SAFE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서류 정보 페이지("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세부사항(Details of Priority Claim of Earlier Application)")에서 국제사무국에 DAS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접근코드를 입력 할 수 있음.
- 출원서 서식으로 서면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 서식(PCT/RO/101) 내 제 6 기재란에 있는 체크박스들에 체크하고 필요한 우선권서류 접근코드를 명시(우선권서류가 복수인 경우 각 우선권서류에 대해 명시).

출원 후:

-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ePCT를 통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요청.
  - 강력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해당 접근코드를 액션 "DAS로부터 우선권서류 입수(Obtain priority document from DAS)"에 입력. 그러면 ePCT에서 해당 우선권서류를 DAS에서 검색하고, 입력된 우선권주장 데이터와 대조하여 해당 접근코드 인증. 국제사무국에서 수동 처리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ePCT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되는 액션이므로 권장하는 방법임.
  - 강력한 인증 없이 로그인하여 DAS 접근코드를 적은 메시지(ePCT 메시지, ePCT Message)를 전송하여 국제사무국에 DAS에서 해당 선출원을 입수할 것을 요청.
  - 강력한 인증 없이 로그인하여 DAS 접근코드를 적은 서신을 "일반 통신문(General correspondence)" 문서 유형으로 업로드하여 국제사무국에 DAS에서 해당 우선권서류를 입수할 것을 요청.

<sup>1</sup> 유럽 특허청 및 일본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접근코드를 받는 방법의 예는 본 유용한 도움말 1부 참조.

<sup>2</sup> 국제사무국은 기밀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으나, DAS 접근코드 제공은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sup>3</sup> 다른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관청에 확인해 보십시오.

- DAS 접근코드를 적은 서신을 우편으로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sup>4</sup> 국제사무국이 DAS 에서 해당 선출원을 입수할 것을 요청.

보통 국제출원을 할 때 국제사무국에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보다 쉽습니다. 그래도 출원 후에 요청하기를 희망하시면, **국제공개일 전에** 아래를 모두 완료하는 경우 요청 기한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 1 청과 관련하여 모든 필요 단계를 취함.
- 국제사무국에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할 것을 유효하게 요청함.
- 필요한 접근코드를 제공함.

국제사무국이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면, 출원인에게 서식 PCT/IB/304 로써 입수 사실을 확인해줍니다. ePCT 에서 해당 국제출원에 접근하실 수 있으면, 해당 서식을 발급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WIPO 의 DAS 출원인 포털(DAS Applicant Portal) 링크입니다.

[www3.wipo.int/dasapplicant/en/pages/workbench/applicant.xhtml](http://www3.wipo.int/dasapplicant/en/pages/workbench/applicant.xhtml)

위 포털에는 본인의 WIPO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sup>5</sup>. 해당 포털에서는 관청들이 출원인의 우선권서류들을 조회한 전체 이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확인하는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포털에서는 우선권 번호와 출원일, 접근코드를 입력하여 우선권서류를 DAS 워크벤치(DAS Workbench)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PCT 규칙 17.1(b 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에 DAS 시스템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PCT 규칙 17.1(a)에 따라 우선권서류의 인증사본을 국제사무국이나 수리관청에 제출하거나, PCT 규칙 17.1(b)에 따라 수리관청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sup>6</sup>, PCT 규칙 17.1 에 따른 우선권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우선권서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선국내출원으로든, 선국제출원으로든) 선출원이 이루어진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리관청에서 이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권서류 제출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편 5.070 내지 5.070D 단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sup>4</sup> 국제사무국 우편주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national Bureau (PCT), 34, chemin des Colombette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sup>5</sup> 아직 WIPO 계정이 없으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https://ipportal.wipo.int/>).

<sup>6</sup> ePCT 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Priority Claims)" 화면에서 "수리관청이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Receiving Office to prepare and transmit to the International Bureau)"를 선택. 출원서 서식(PCT/RO/101)으로 서면 출원하는 경우, 제 6 기재란의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마리노 특허상표청, 수리관청 기능 중단 및 국내루트 폐쇄

#### PCT 정보 업데이트

**CA** 캐나다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 국내단계 진입 특별요건; 수수료)

**EG** 이집트 (수수료)

**FI** 핀란드 (국제조사보고서 및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ID** 인도네시아 (사본 수, 수수료)

**IE** 아일랜드 (관청명, 이메일/인터넷 주소)

**IL** 이스라엘 (수수료)

**ME** 몬테네그로 (관청명,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통신수단, 수수료)

**NO**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PH** 필리핀 (전화/팩스 번호)

**RO** 루마니아 (출원서 서식의 출원언어)

**UG** 우간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관청의 요건 요약,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